

# 지재권 다시보기

## 오픈넷 아카데미 6강

남희섭 (사단법인 오픈넷)

2014. 10. 16.

# 목 차

- 01 지재권은 왜 어려운가?
- 02 지재권 – 개요
- 03 형성 과정 – HISTORY
- 04 지재권은 필요한가?
- 05 문제점과 대안
- 06 오픈넷의 활동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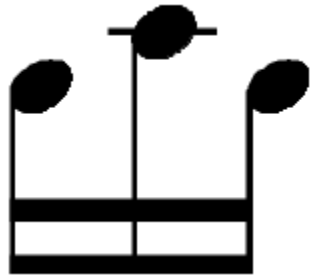


2013年

# 法典

玄岩 趙相元 創始

주현암사



블로그

음반제작자의 전송권 침해?

### 저작권법개정법률안

2004년 9월23일 국회 통과

2004년 10월 16일 공포

제64조의2 (전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제67조의3 (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부칙 [제7233호,2004.10.16]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도10777 판결



광고에 사용

### 저작권법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①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 개방된 장소에 향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에 향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 등에 향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 “미술저작물등” =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



이문세 3집  
발매일: 1985년  
타이틀: 난 아직 모르잖아요



이문세 4집  
발매일: 1987년  
타이틀: 사랑이 지나가면

?

2007년 저작권 소멸

2015년(?) 저작권 소멸



# 음반 저작권 보호기간

1957

발행 또는 공연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저작자의 생존간 및 사후 30년간  
존속한다.

1987

저작인접권 (음반): 그 음을 맨 처음 그 음반에  
고정한 때부터 20년

1994

저작인접권(음반): 그 음을 맨 처음 그 음반에 고정한 때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  
부칙: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013


저작인접권 (음반): 발행 다음 해부터 70년  
부칙 제4조: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 → 보호기간 20년이 경과되어 소멸된 저작인접권은  
이 법 시행일부터 회복되어 저작인접권자에게 귀속된다.


 Google Play 


-  APPS
-  GAMES
-  MOVIES & TV
-  MUSIC
-  BOOKS
-  MAGAZINES


*Photography Apps*  
Shutterbug Collection


[SEE MORE](#)


- 

Camera 2 

★★★★★ \$2.99
- 

500px 

★★★★★ FREE
- 

Otaku Camera 

★★★★★ FREE

## 특허법 제2조

3. "실시"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나목의 행위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 양도: 유체물의 점유 이전이 수반되어야 함.

## 일본특허법

物（プログラム等を含む。以下同じ。）の発明にあつては、その物の生産、使用、譲渡等（譲渡及び貸渡しをいい、その物がプログラム等である場合には、電気通信回線を通じた提供を含む。以下同じ。）、輸出若しくは輸入又は譲渡等の申出（譲渡等のための展示を含む。以下同じ。）をする行為。

물건(프로그램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발명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생산, 사용, 양도등(양도 및 대여를 말하고, 그 물건이 프로그램등인 경우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출이나 수입 또는 양도등의 신청(양도등을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장례용품에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

삼죽오문양  
지정상품: 장례용품 등

### 상표법 제2조

1.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7.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 다.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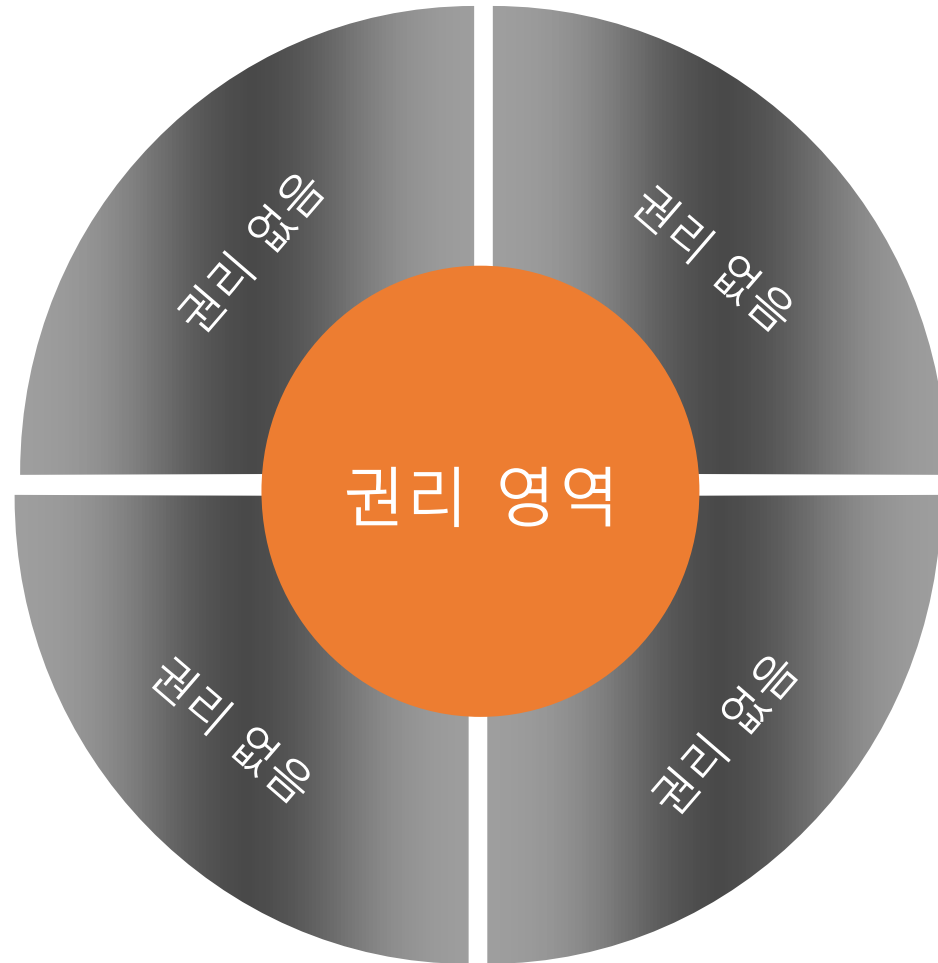


제도적 권리

자연적 권리

# 지적재산권이 어려운 이유 (2)

지적재산 **권**



아이디어? 표현?



# 판매용 음반?

**STARBUCKS**  
**MUSIC**  
**SERIES**   
IN ASSOCIATION WITH KLUE

LIVE MUSIC FROM NEW &  
UP-AND-COMING ARTISTES

**kt mus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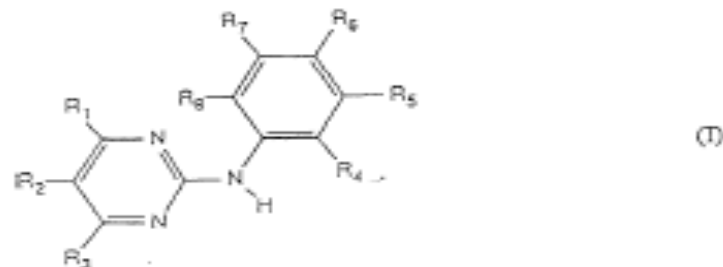




## (57) 청구의 범위

### 청구항 1.

일반식(I)의 N-페닐-2-피리미딘-아민 유도체 또는 하나 이상의 임 형성 그룹을 포함하는 이의 염.



특허권: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상기 식에서,

R<sub>1</sub>은 4-페라지닐, 1-메틸-1H-피롤릴, 아미노- 또는 아미노-저급 알킬 치환된 페닐(여기서, 아미노 그룹은 각각 유리되거나 알킬화되거나 아실화된 상태로 존재한다), 5원 환 탄소원자에 결합된 1H-인돌릴 또는 1H-이미다졸릴, 또는 환 탄소원자에 결합되고 질소원자가 산소에 의해 치환되거나 치환되지 않은, 치환되지 않거나 저급 알킬 치환된 페리딜이고,

R<sub>2</sub> 및 R<sub>3</sub>은 각각 독립적으로 수소 또는 저급 알킬이며,

라디칼 R<sub>4</sub>, R<sub>5</sub>, R<sub>6</sub>, R<sub>7</sub> 및 R<sub>8</sub>에 있어서 이들 중의 하나 또는 두개는 각각 니트로; 플루오로 치환된 저급 알콕시 또는 일반식-N(R<sub>9</sub>)-C(=X)-(Y)<sub>n</sub>-R<sub>10</sub> (11)의 라디칼(여기서, R<sub>9</sub>는 수소 또는 저급 알킬이고, X는 옥소, 티오, 이미노, N-저급 알킬-이미노, 하이드록시이미노 또는 O-저급 알킬-하이드록시이미노이며, Y는 산소 또는 그룹 NH이고, n은 0 또는 1이며, R<sub>10</sub>은 탄소수 5 이상의 지방족 라디칼, 또는 방향족, 방향족-지방족, 지환족, 지환족-지방족, 헤테로사이클릭 또는 헤테로사이클릭-지방족 라디칼이다)이고, 나머지 라디칼 R<sub>4</sub>, R<sub>5</sub>, R<sub>6</sub>, R<sub>7</sub> 및 R<sub>8</sub>은 각각 독립적으로 수소; 유리되거나 알킬화된 아미노, 페페라지닐, 페페리디닐, 피롤리디닐 또는 모르폴리닐에 의해 치환되거나 치환되지 않은 저급 알킬; 저급 알카노일; 트리플루오로메틸; 유리되거나 에테르화되거나 에스테르화된 하이드록시; 유리되거나 알킬화되거나 아실화된 아미노; 또는 유리되거나 에스테르화된 카복시이다.



U.S. Patent 8,046,721

Claim 1. A method of unlocking a hand-held electronic device, the device including a touch-sensitive display, the method comprising: detecting a contact with the touch-sensitive display at a first predefined location corresponding to an unlock image; continuously moving the unlock image on the touch-sensitive display in accordance with movement of the contact while continuous contact with the touch screen is maintained, wherein the unlock image is a graphical, interactive user-interface object with which a user interacts in order to unlock the device; and unlocking the hand-held electronic device if the moving the unlock image on the touch-sensitive display results in movement of the unlock image from the first predefined location to a predefined unlock region on the touch-sensitive display.

# 불확정 개념

특허

균등론 (Doctrine of Equivalents)

저작권

실질적 유사성 (Substantial Similarity)

상표

혼동적 유사성 (Confusingly Similarity)

# 02 지재권 - 개요

## 창작에 관한 권리

- 특허, 실용신안
- 저작권
- 디자인권
- 식물신품종
-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

## 창작과 무관한 권리

- 상표
- 지리적 표시
- 영업비밀
- 의약품/농약의 시판허가를 위한 자료



# 특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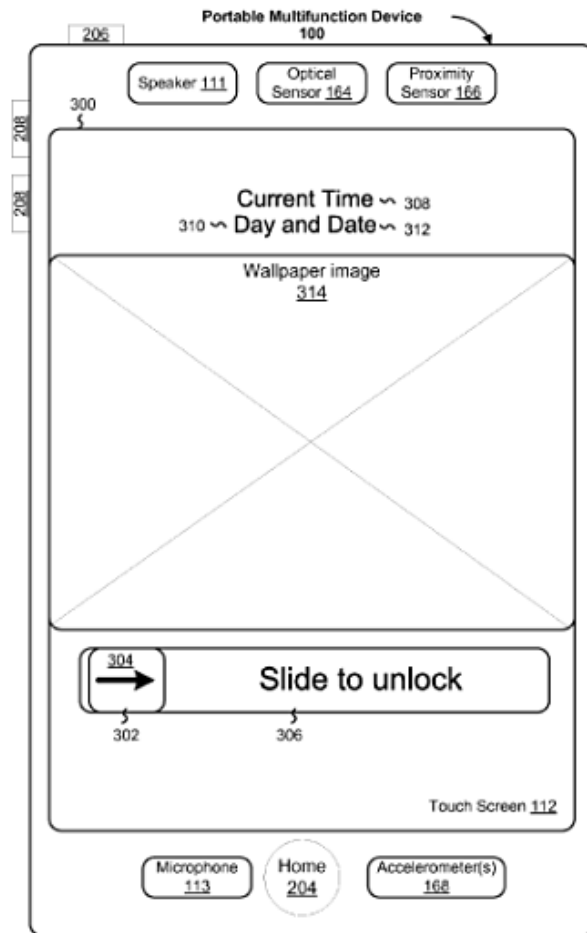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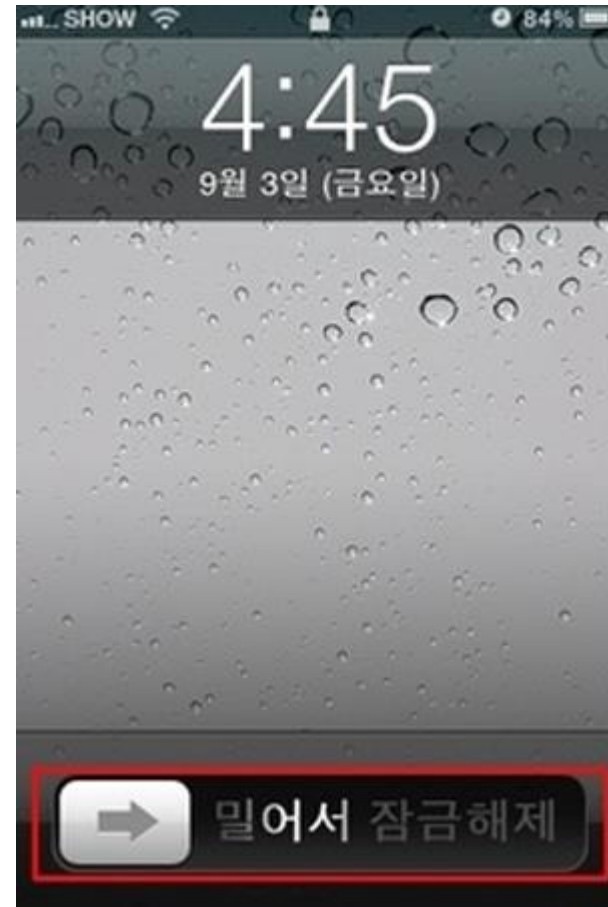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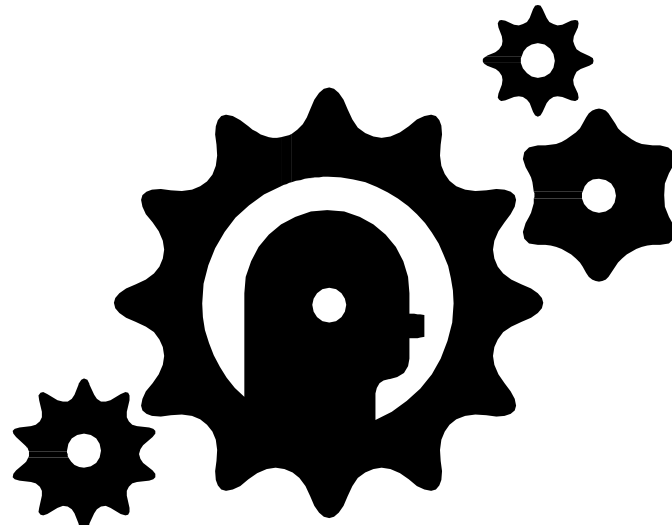


Figure 3



특허



방법  
정공  
새로운 용도





# 특허증

CERTIFICATE OF PATENT

특허 제 10-0780929 호 (PATENT NUMBER) 출원번호 (APPLICATION NUMBER) 제 2006-0057017 호  
 출원일 (FILING DATE:YY/MM/DD) 2006년 06월 23일  
 등록일 (REGISTRATION DATE:YY/MM/DD) 2007년 11월 23일

발명의명칭 (TITLE OF THE INVENTION)  
 수로용 디스크 드럼 필터장치

특허권자 (PATENTEE)  
 미래환경기술(주) ( 51111-01-1111 )  
 경기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77

발명자 (INVENTOR)  
 등록사항란에 기재

위의 발명은 「특허법」에 의하여 특허등록원부에 등록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PATENT IS REGISTERED ON THE REGIST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2007년 11월 23일



특허청  
 COMMISSIONER,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The Director of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Has received an application for a patent for a new and useful invention. The title and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are enclosed. The requirements of law have been complied with, and it has been determined that a patent on the invention shall be granted under the law.

Therefore, this

### United States Patent

Grants to the person(s) having title to this patent the right to exclude others from making, using, offering for sale, or selling the invention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r importing the invention in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the term set forth below, subject to the payment of maintenance fees as provided by law.

If this application was filed prior to June 8, 1995, the term of this patent is the longer of seventeen years from the date of grant of this patent or twenty years from the earliest effective U.S. filing date of the application, subject to any statutory extension.

If this application was filed on or after June 8, 1995, the term of this patent is twenty years from the U.S. filing date, subject to any statutory extension. If the application contains a specific reference to an earlier filed application or applications under 35 U.S.C. 120, 121 or 365(c), the term of the patent is twenty years from the date on which the earliest application was filed, subject to any statutory extensions.

Director of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특허 등록번호	10-0261366-0000
---------	-----------------

권리란	
표시번호	사항
1번	<p>출원 연월일 : 1993년 04월 03일 출원 번호 : 10-1993-0005628 우선권 주장일자 : 1992년 04월 03일 우선권 주장수 : 1 우선권 주장국 : 스위스 공고 연월일 : 2002년 07월 18일 공고 번호 : 특허결정(심결)연월일 : 2000년 01월 26일 청구범위의 항수 : 0 유 별 : C07D 239/42 발명의 명칭 : 피리미딘유도체,이의제조방법및이를 포함하는 약제학적조성물 존속기간(예정)만료일 : 2013년 06월 03일</p> <p style="text-align: right;">2000년 04월 18일 등록</p>
2번	<p>(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등록)</p> <p>연장등록출원연월일 : 2001년 09월 20일 연장등록출원번호 : 10-2001-0058428 연장등록결정연월일 : 2001년 12월 28일 연장대상청구항수 : 8 연장대상특허청구범위 : 특허 제0261366호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5항, 제9항, 제10항, 제11항 연 장 기 간 : 2월 허가 또는 등록의 내용 : 약사법 제34조에 의한 의약품 수입품목허가</p> <p style="text-align: right;">2001년 12월 28일 등록</p>

특허권자란	
순위번호	사항
1번	<p>(등록권리자) 노바티스 아게 스위스 **** 바젤 슈바르츠발달레 ***</p> <p style="text-align: right;">2000년 04월 18일 등록</p>

※ 신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소 일부는 제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본 사이트에서는 일부(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부기 등)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므로, 해당 정보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등록원부를 발급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료란					
제 01 - 03 년분	금 액	702,000 원	2000년 04월 19일	납입	
제 04 - 04 년분	금 액	371,000 원	2003년 03월 26일	납입	
제 05 - 05 년분	금 액	335,000 원	2004년 04월 08일	납입	
제 06 - 06 년분	금 액	335,000 원	2005년 03월 04일	납입	
제 07 - 07 년분	금 액	593,000 원	2006년 03월 15일	납입	
제 08 - 08 년분	금 액	560,000 원	2007년 04월 11일	납입	
제 09 - 09 년분	금 액	532,000 원	2008년 04월 11일	납입	
제 10 - 10 년분	금 액	845,000 원	2009년 04월 10일	납입	
제 11 - 11 년분	금 액	845,000 원	2010년 04월 13일	납입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7  
C07D 239/42  
A61K 31/505

(45) 공고일자 2002년07월18일  
(11) 등록번호 10-0261366  
(24) 등록일자 2000년04월18일

(21) 출원번호 10-1993-0005628  
(22) 출원일자 1993년04월03일

(65) 공개번호 특1993-0021624  
(43) 공개일자 1993년11월22일

(30) 우선권주장 01083/92-1 1992년04월03일 스위스(CH)

(73) 특허권자 노바티스 아게  
더블류. 하링, 지. 보이롤  
스위스 4058 바젤 슈바르츠발달레 215

(72) 발명자 위르그길머만  
스위스연방4313 뢰흘린바이덴파크르크1

(74) 대리인 이병호

심사관 : 장진아

(54) 피리미딘유도체,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약제학적 조성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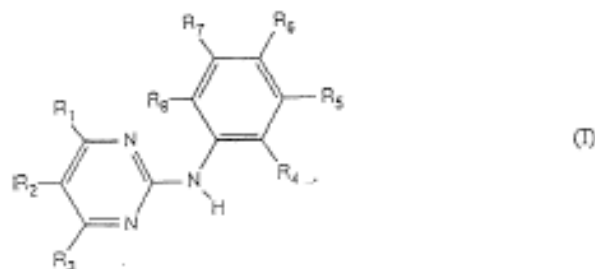
요약

일반식(I)의 N-페닐-2-피리미딘-아민 유도체 및 하나 이상의 염-형성 그룹을 포함하는 이의 염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일반식(I)의 N-페닐-2-피리미딘-아민 유도체 또는 하나 이상의 임 형성 그룹을 포함하는 이의 염.



상기 식에서,

R<sub>1</sub> 은 4-피라지닐, 1-메틸-1H-피롤릴, 아미노- 또는 아미노-저급 알킬 치환된 페닐(여기서, 아미노 그룹은 각각 유리되거나 알킬화되거나 아실화된 상태로 존재한다), 5원 환 탄소원자에 결합된 1H-인돌릴 또는 1H-이미다졸릴, 또는 환 탄소원자에 결합되고 질소원자가 산소에 의해 치환되거나 치환되지 않은, 치환되지 않거나 저급 알킬 치환된 피리딜이고,

R<sub>8</sub> 및 R<sub>9</sub> 은 각각 독립적으로 수소 또는 저급 알킬이며,

라디칼 R<sub>4</sub>, R<sub>5</sub>, R<sub>6</sub>, R<sub>7</sub> 및 R<sub>8</sub> 에 있어서 이들 중의 하나 또는 두개는 각각 니트로; 플루오로 치환된 저급 알콕시 또는 일반식-N(R<sub>9</sub>)-C(=X)-(Y)<sub>n</sub>-R<sub>10</sub> (11)의 라디칼(여기서, R<sub>9</sub> 는 수소 또는 저급 알킬이고, X는 옥소, 티오, 이민노, N-저급 알킬-이민노, 하이드록시이민노 또는 0-저급 알킬-하이드록시이민노이며, Y는 산소 또는 그룹 NH이고, n은 0 또는 1이며, R<sub>10</sub> 은 탄소수 5 이상의 지방족 라디칼, 또는 방향족, 방향족-지방족, 지환족, 지환족-지방족, 헤테로사이클릭 또는 헤테로사이클릭-지방족 라디칼이다)이고, 나머지 라디칼 R<sub>4</sub>, R<sub>5</sub>, R<sub>6</sub>, R<sub>7</sub> 및 R<sub>8</sub> 은 각각 독립적으로 수소; 유리되거나 알킬화된 아미노, 피페라지닐, 피페리디닐, 피롤리디닐 또는 모르폴리닐에 의해 치환되거나 치환되지 않은 저급 알킬; 저급 알카노일; 트리플루오로메틸; 유리되거나 에테르화되거나 에스테르화된 하이드록시; 유리되거나 알킬화되거나 아실화된 아미노; 또는 유리되거나 에스테르화된 카복시이다.

## 상표

- 타인의 상품/서비스와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지(mark)
- 회사 명칭(Apple, 삼성전자)
- 제품 이름(iPhone, Galax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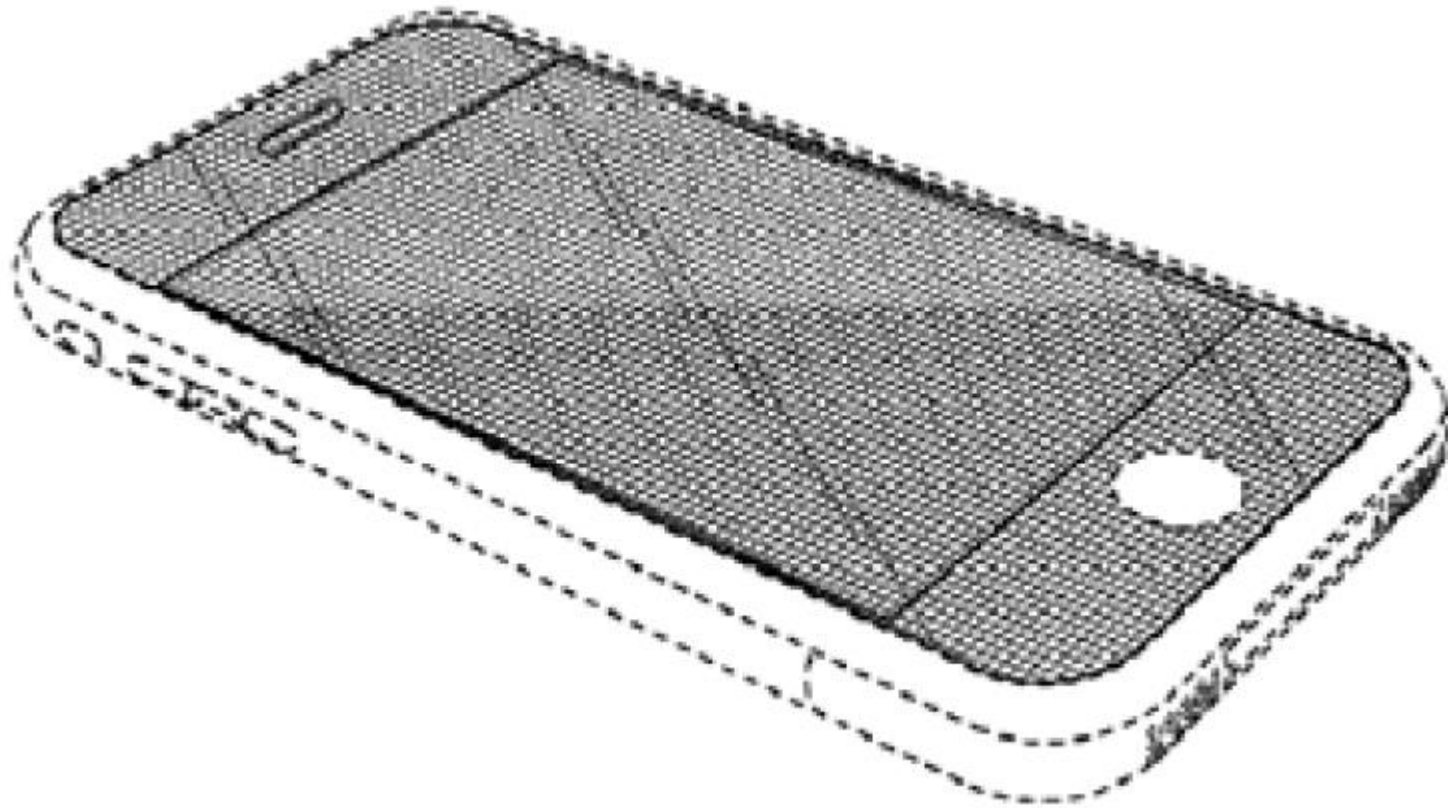
Apple Ic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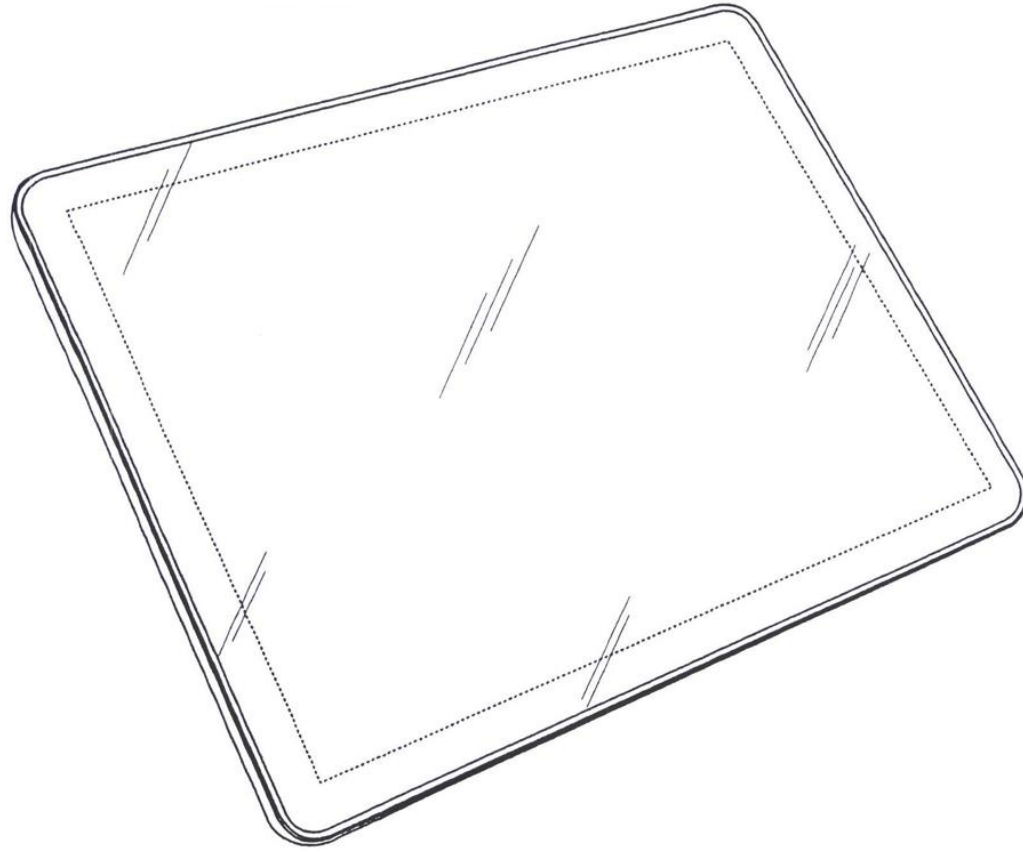
Samsung Icons



## 디자인



## 디자인



## 디자인





###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 문학작품: 시, 소설, 수필 등
- 학술: 논문
- 영상저작물: 영화, TV 드라마, 동영상
- 음악저작물: 작곡, 작사, 음반, 연주, 공연
- 연극: 연극, 무예, 뮤지컬, 안무
- 미술: 회화, 서예, 디자인, 조각, 공예
- 사진
- 도형: 지도, 설계도, 약도, 모형
- 건축저작물
- 컴퓨터 프로그램
- 신문기사,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 03 형성 과정 - 역사

베니스 특허법(1474)  
영국 전매조례(1624)  
영국 앤여왕법(17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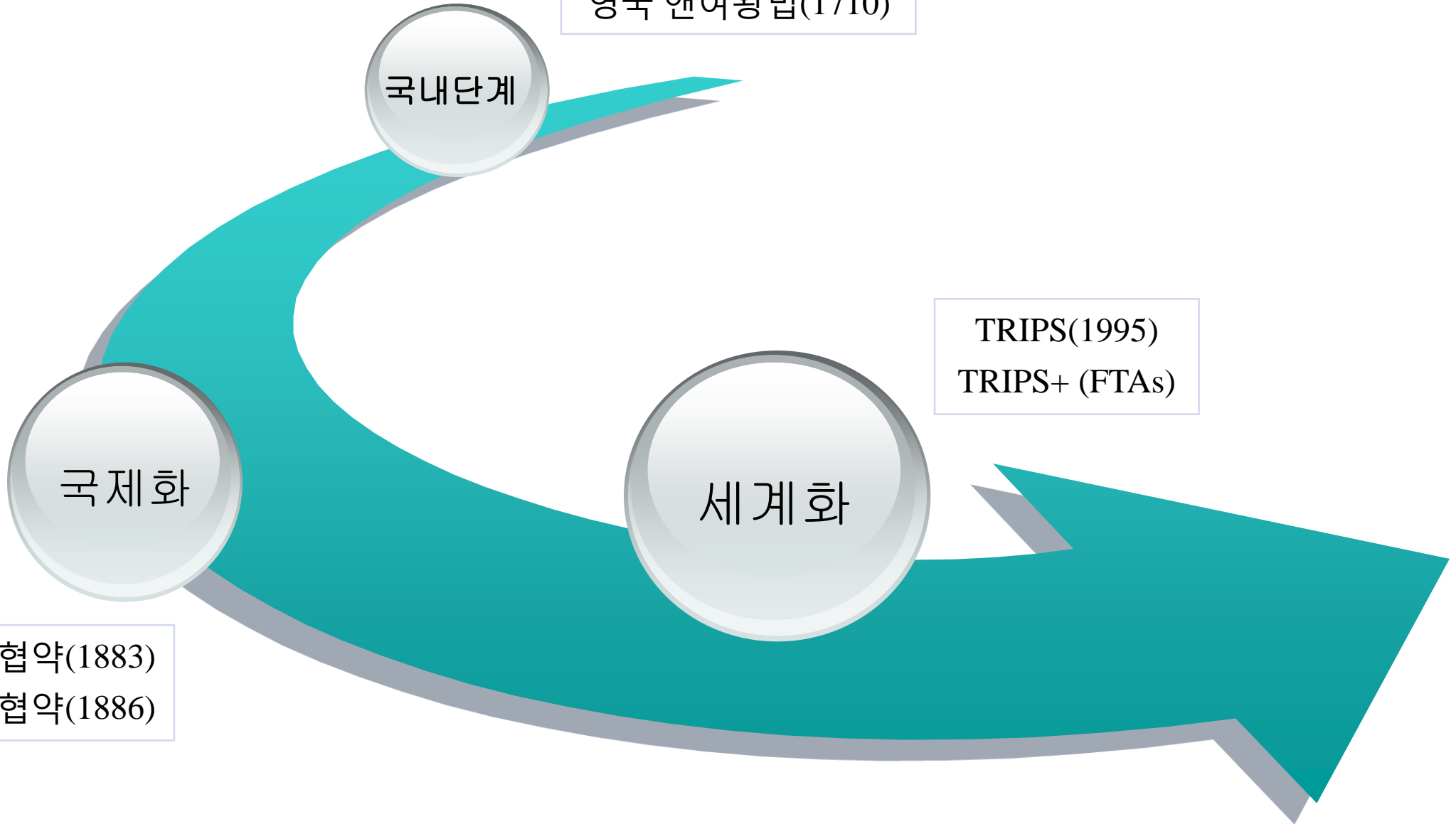
국내단계

TRIPS(1995)  
TRIPS+ (FTAs)

국제화

세계화

파리협약(1883)  
베른협약(1886)



# 국내 단계

- ◻ 특허
  - 중상주의 경제정책
  - 특권(privilege)
  - Inventor = Introducer
- ◻ 저작권
  - 서적무역의 통제
  - 저자의 자립
-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지재권 없었음(Non-History of IP)

# 국제화

- ❑ 파리협약(1883)
  - 11개 국가(유럽 9, 남미 2)
  - 남미 2개국 서명 후 탈퇴, 유럽 3개국은 특허법이 없었음
- ❑ 베른협약(1886)
  - 10개국(유럽 +북아프리카)
  - 양분: Pan-American copyright system
- ❑ 전후
  - 파리협약 47개국(1958), 80개국(1973)
  - 기술이전, 외국인투자촉진

# 세계화(Globalization)

## ☐ TRIPS and TRIPS Plus

## ☐ Forum Shift

### ■ Horizontal Shif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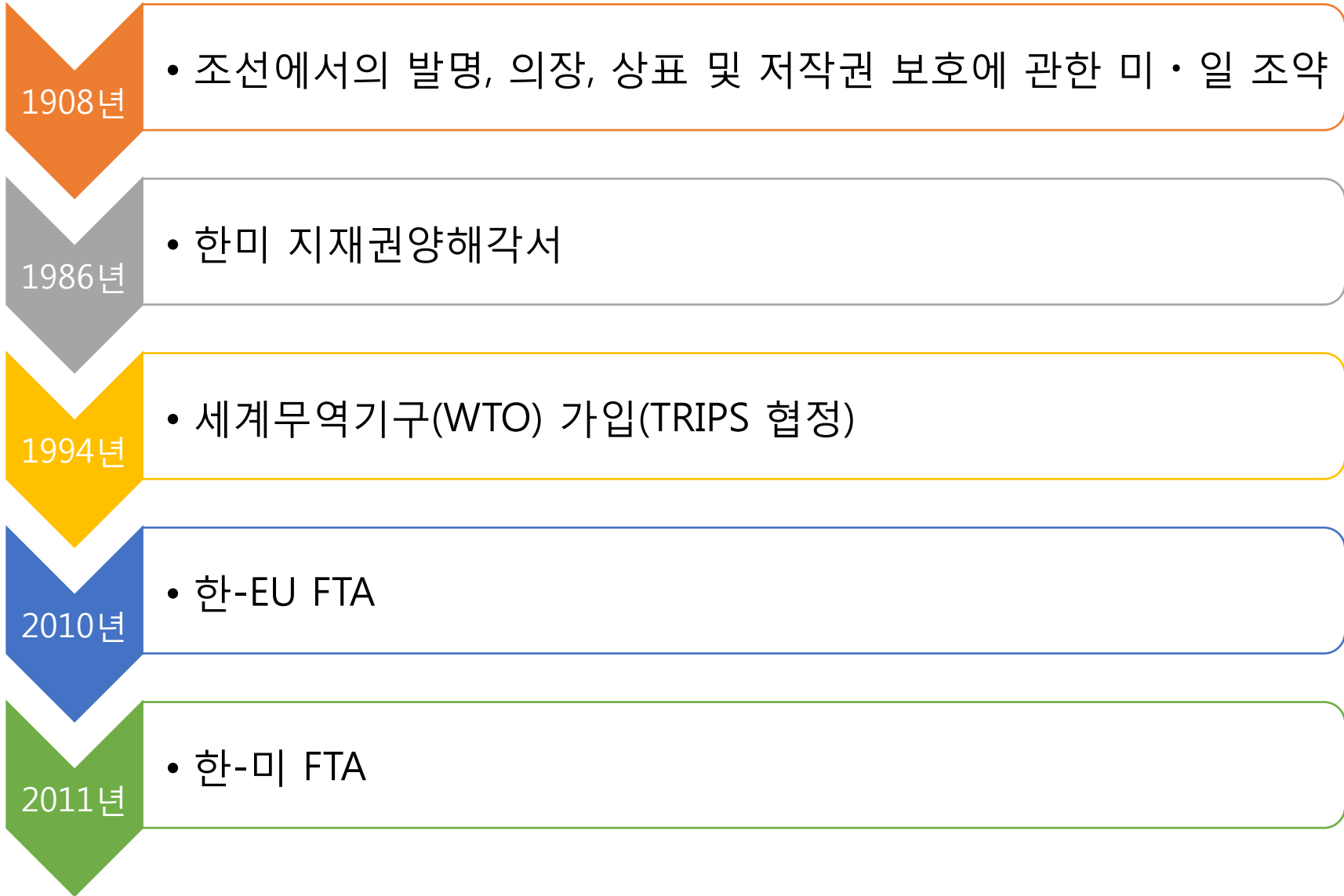
- 국가 또는 국가간 → WIPO → WTO

### ■ Vertical Shift

- 80년대: Bilateral
- 90년대: Bilateral + Multilateral
- 21세기: Bilateral + Plurilateral

# 구조화된 행위자







# 04 지재권은 필요한가?



- ◆ **배제성(Excludability):** 타인의 이용을 막을 수 있는가?
- ◆ **경합성(rivalry):** 나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와 경합하는가?



- ❑ 지재권 = 타인을 배제할 권리
- ❑ 공공재 → 소비재
- ❑ 시장가격 → 경제적 보상을 통한 창작의 장려
- ❑ “비공유지의 비극” 또는 “사유지의 비극”
- ❑ 분배정의에는 무관심,
- ❑ 사회적 이용 저해
- ❑ 보호와 이용의 균형 무너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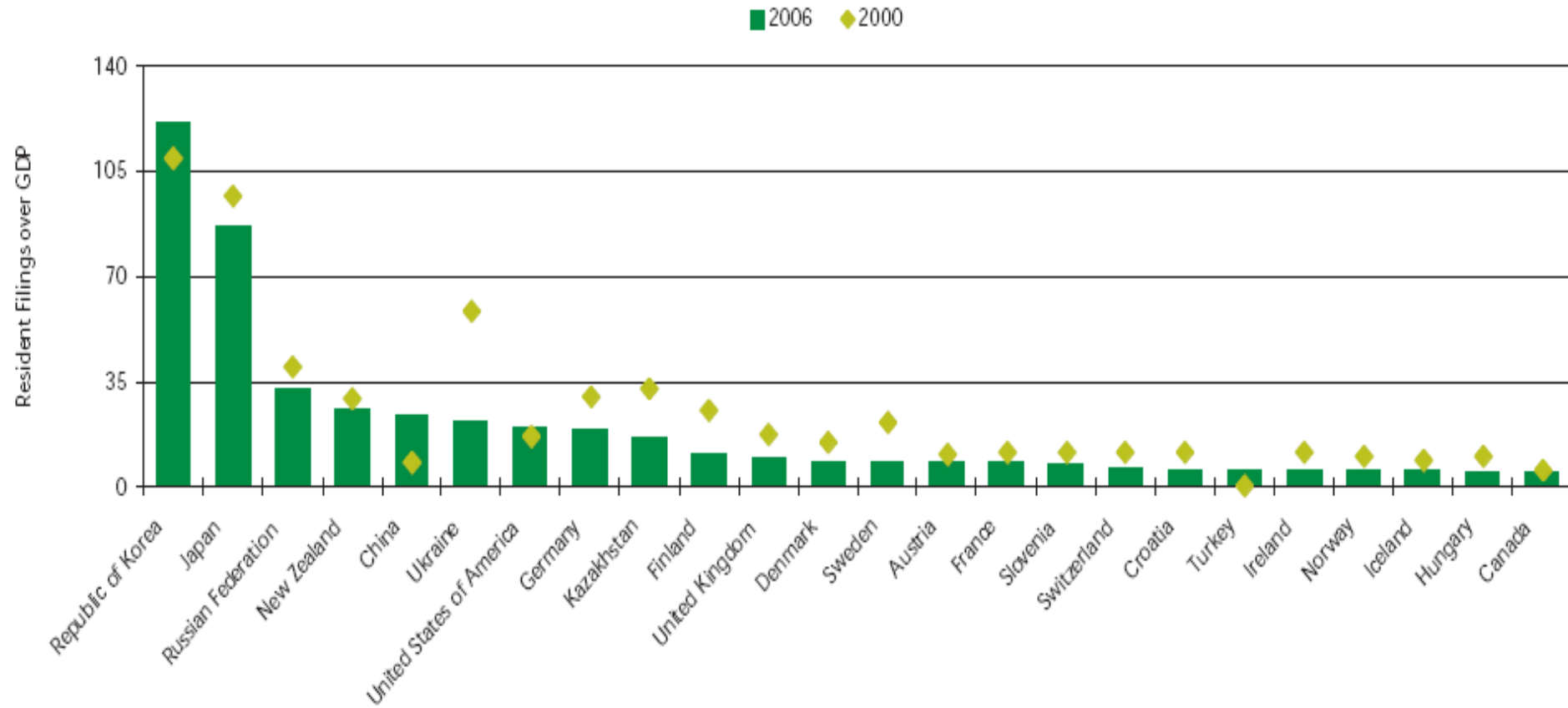
# 05 문제점과 대안

# 특히 제도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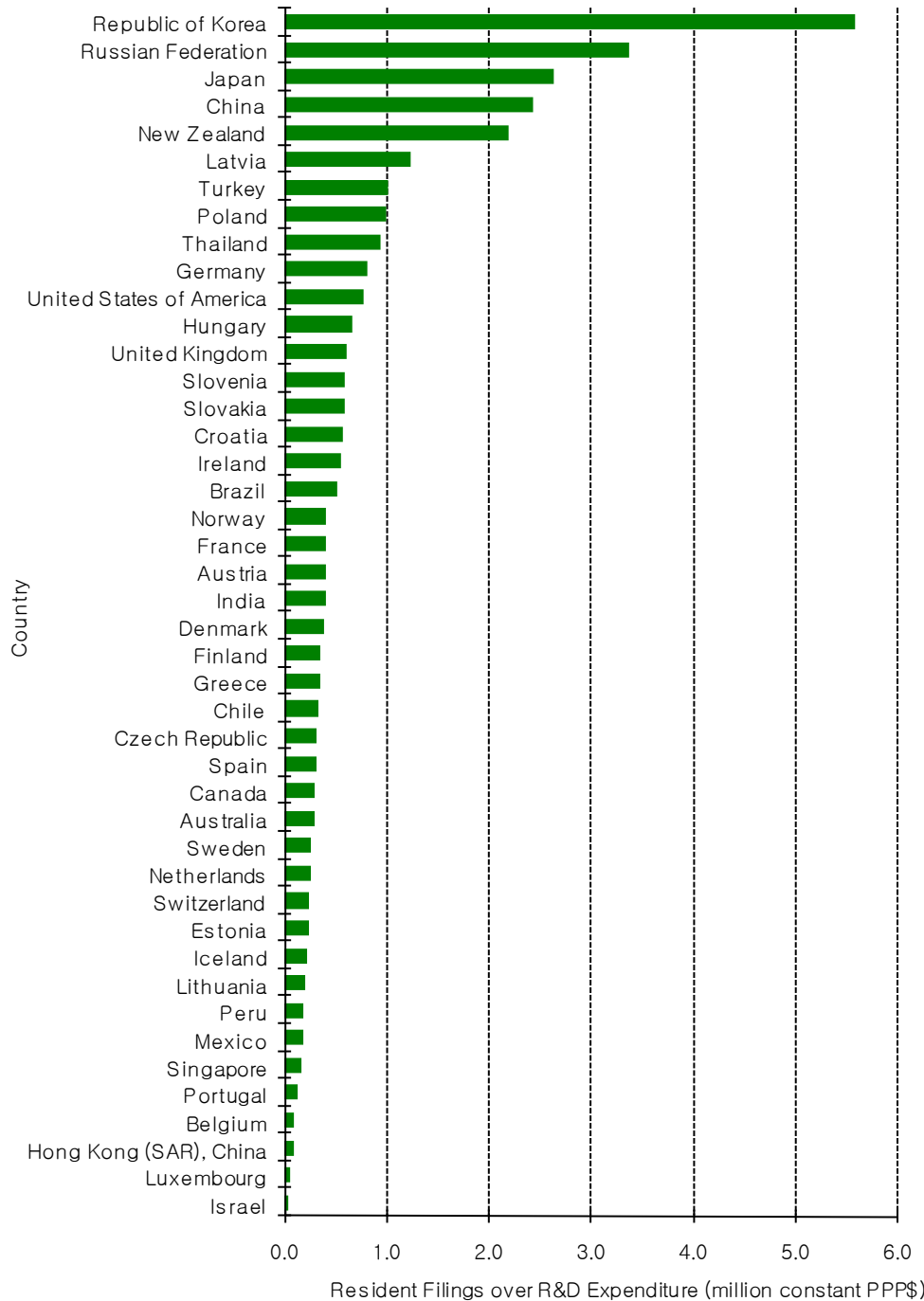


세계 4위 특허 강국  
IP5

Resident patent filings per gross domestic product: selected countries, 2006







## R&D 투자대비 내국인 특허출원

2006년 기준으로 R&D 투자비 대비 내국인의 특허출원수  
 한국: 백만달러당 5.597건,  
 2위 일본(2.635건)의 2.1배,  
 미국(0.778건)의 7.2배,  
 독일(0.816건)의 6.9배,  
 영국(0.611건)의 9.2배,  
 스위스(0.240건)의 23배

➔ 기초 연구 소홀,  
 특허출원 남발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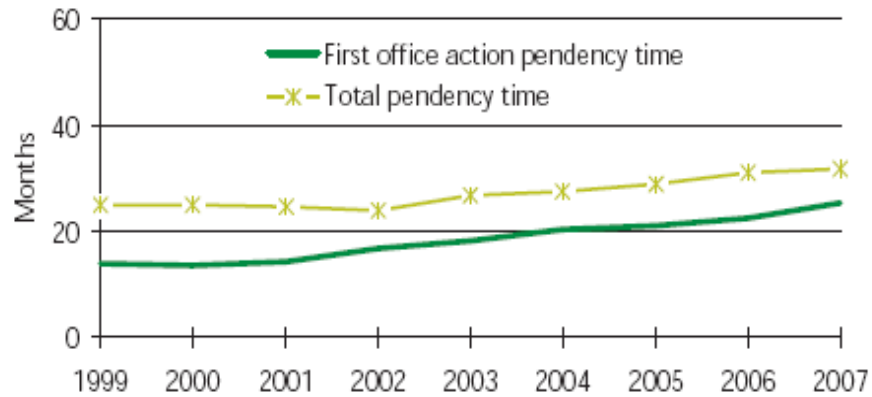
# 심사처리 기간

국가별 심사처리 기간 (1차 심사처리기간, 단위: 개월) (출처: 통계청 데이터베이스, WIPO Statistics Database, annual reports and trilateral statistical reports 및 특허청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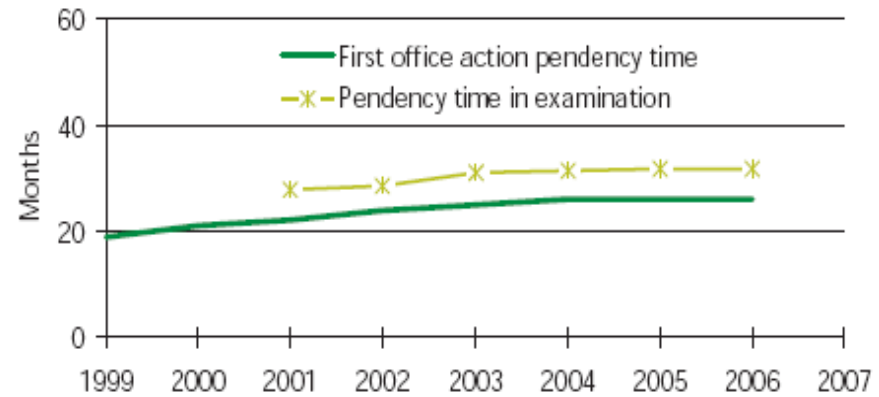
구분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한국	23.6	20.6	21.3	22.6	22.1	21.0	17.6	9.8	9.8			18.5	16.8	14.8	13.2	11.7
미국	13.8	13.6	14.1	16.7	18.3	20.2	21.1	22.6	25.3	-						
일본	19	21	22	24	25	26	26	26	-	-						
EPO	19.8	20.7	20.7	23	24.9	21.7	26.1	23.8	-	-						

## Average pendency time by patent office: selected offi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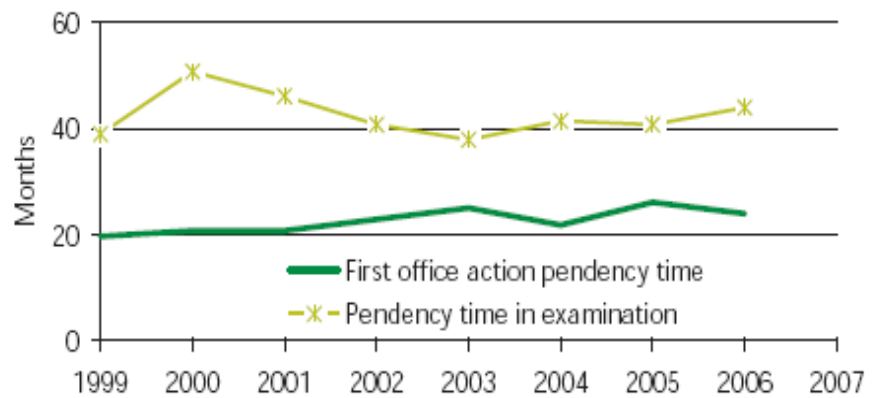
###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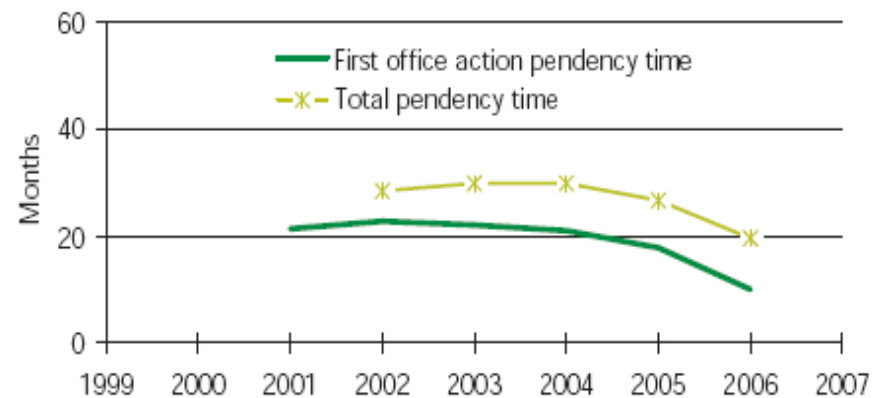
### Japan Patent Off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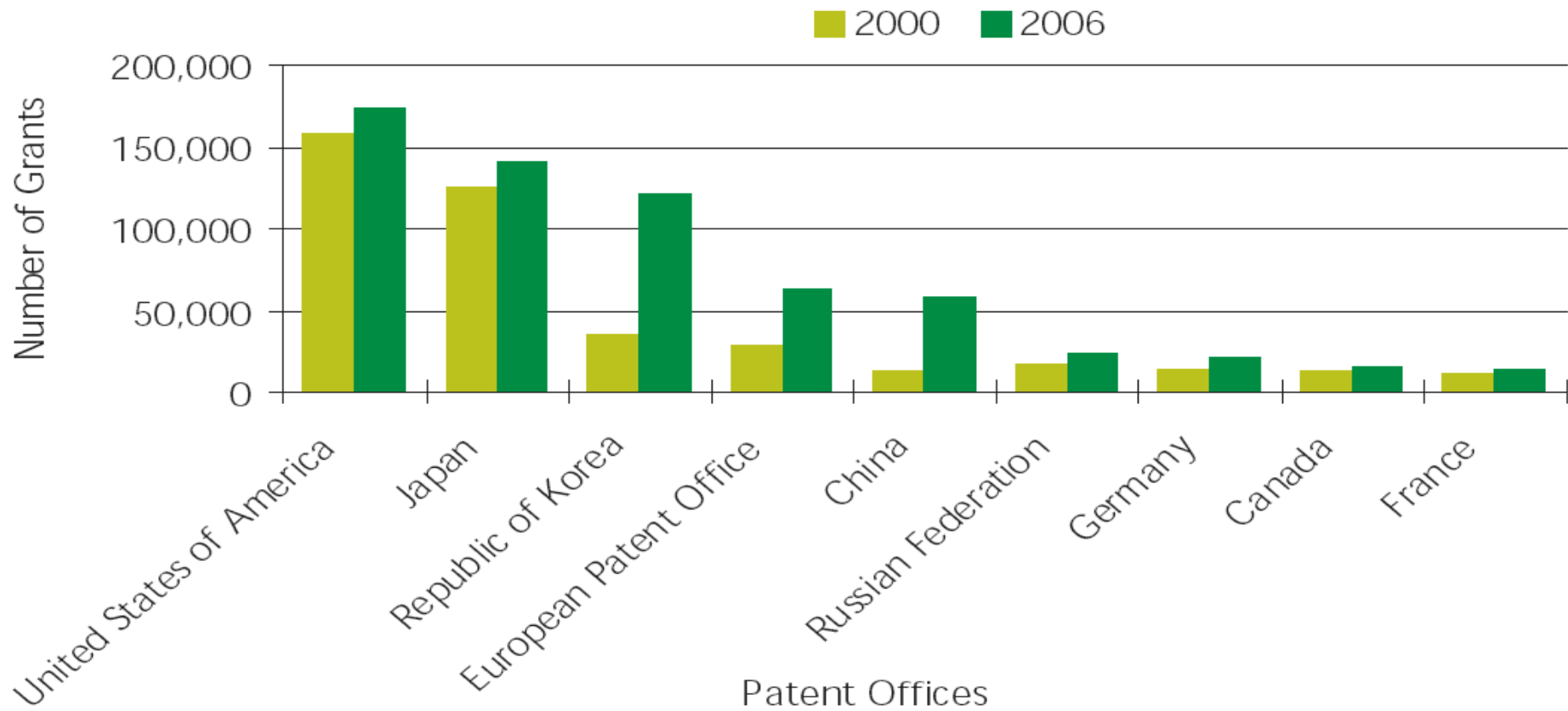


### European Patent Off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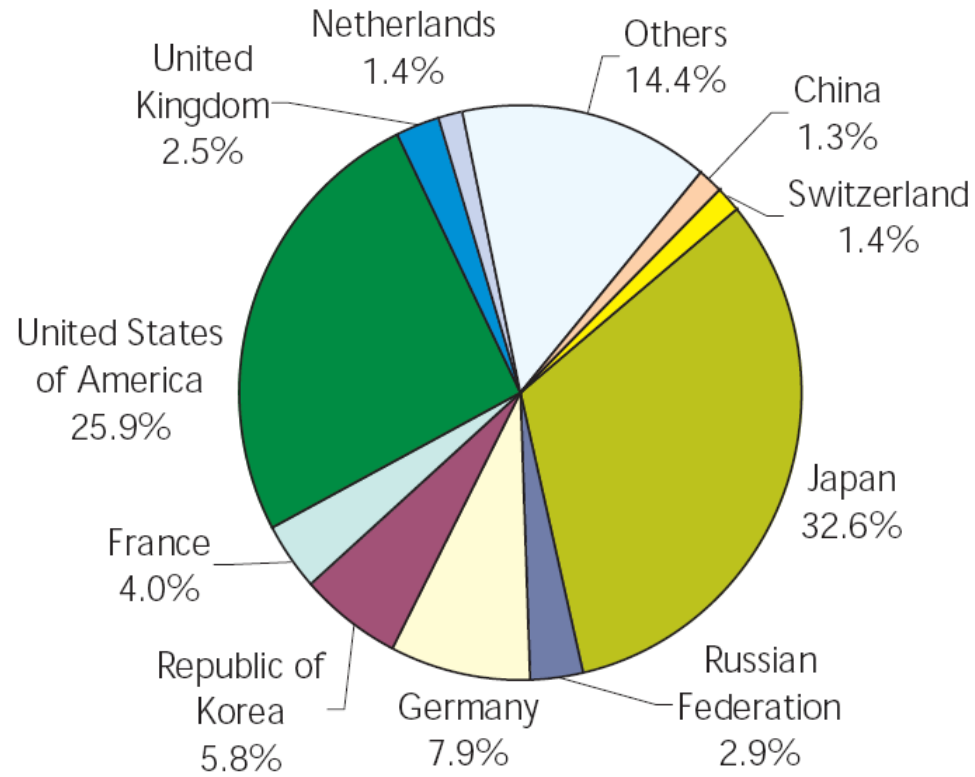
###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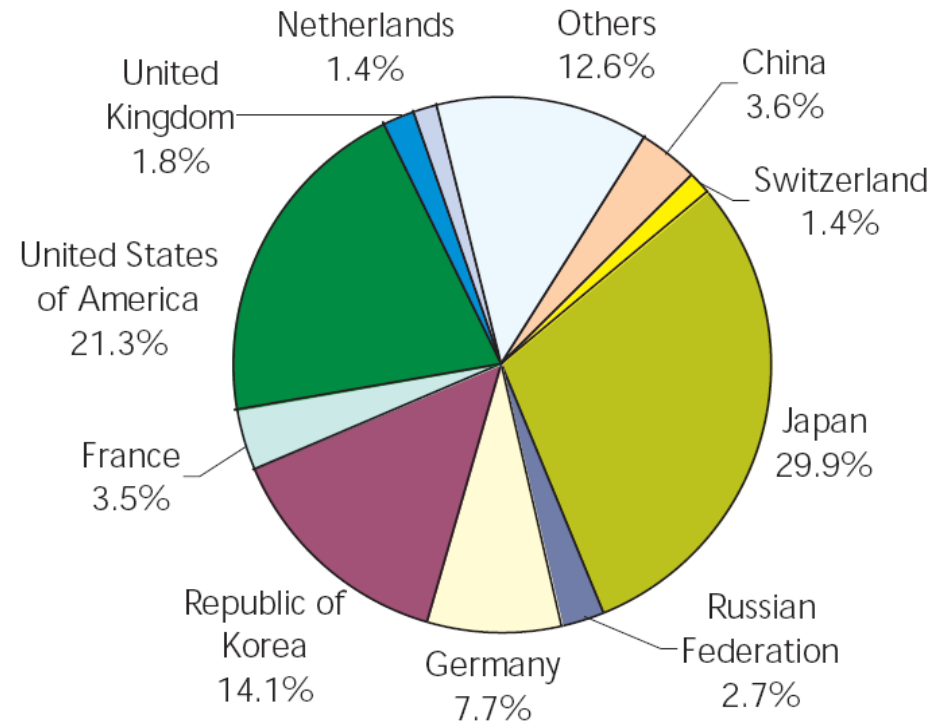


<주요국 특허등록 건수 추이>

2000



2006



<연도별 특허 실용신안 등록율>

연도	'92 ~ '02	'03	'04	'05	'06	'07
1차 심사처리건수	913,687	142,011	151,793	180,432	240,665	143,554
등록건수	556,163	81,437	83,250	106,228	150,526	126,500
등록율	60.9%	57.3%	54.8%	58.9%	62.5%	88.1%



<특히 무효율>

구분	'08	'09	'10	'11	'12
무효율	58.5%	60.1%	53.1%	53.4%	52.1%
	360/615	318/529	336/633	374/700	405/777

# 특허청 = 책임운영기관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중앙부처 중 유일한 중앙책임운영기관

### 중앙책임운영기관

기관장 임기 2년 보장, 1회 연임 가능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일체의 임용권(고위공무원 제외)  
예산: 특별회계 → 예산의 자율성 보장

세출을 자체 세입으로 충당  
2014년 특허청 예산: 4,613억원  
수수료 수입: 4,042억원(87.6%)



# 특허청은 어떤 조직인가?

## ▣ 정부조직법 제32조 제5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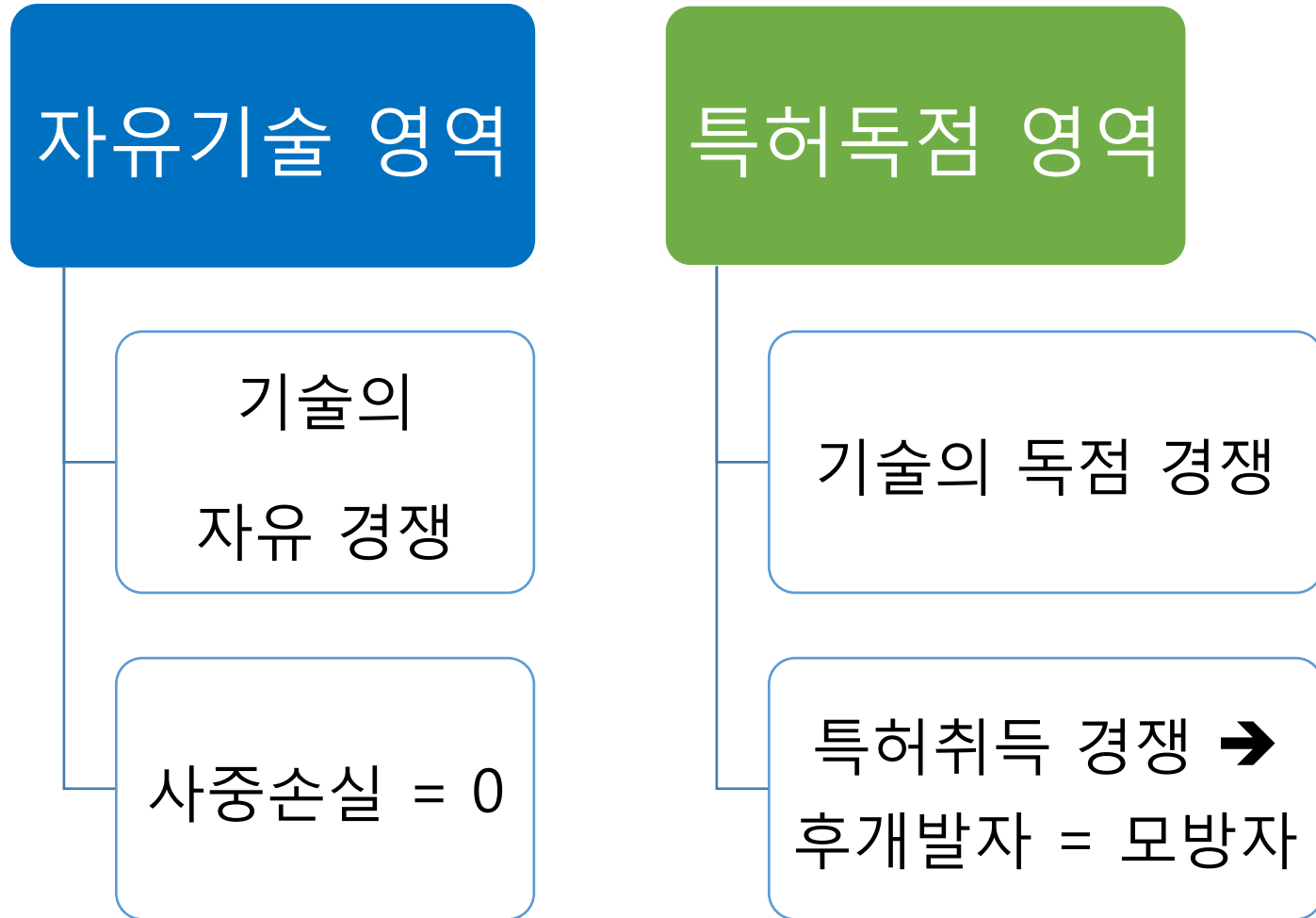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소속으로 특허청을 둔다.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 → 출원 서류 접수, 공개, 등록 관련 업무 등.
- 심사 사무: 5개 심사국
- 심판 사무: 특허심판원

# 특허 심사 사무

## ■ 특허법 제66조

- 심사관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결정을 하여야 한다.
- 특허권 = 특허 결정이라는 행정행위를 통해 창설되는 제도적 권리.
- 특허 등록 요건을 특허권자가 입증하지 않아도 됨.
- 의약품의 시판 허가: 안전성, 유효성을 제약사가 입증해야 함.

# 특허청의 공적 기능 (1)



# 특허청의 공적 기능(2)

## ☐ Jonas Salk



소아마비 백신

“Well, the people, I would say. There is no patent. Could you patent the sun?”

## ☐ Benjamin Franklin



피로침, 소방차,  
벽난로

# 특허청의 공적 기능 (3)

- ❑ 특허출원인 = 기술의 독점을 추구하는 자
- ❑ 규제 대상
- ❑ 그러나 특허청은,
  - 특허출원인 = 고객
  - 특허행정 = 서비스
- ❑ 규제 포획(regulatory capture)

# 특허 제도 → 기술혁신

- ❑ 특허 제도가 기술 혁신을 자동으로 보장하지 못함.

- 미국 헌법: To promote the progress of science and useful arts, by securing for limited times to authors and inventors the exclusive Right to their respective writings and discoveries.
- 한국 특허법 제1조: 이 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가지 핵심 기능

- Disclosure Function: 발명의 공개 기능
- Notice Function: 권리의 공시 기능

# 발명의 공개 기능 (1)

## □ 35 USC §112

- The specification shall contain a written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and of the manner and process of making and using it, in such full, clear, concise, and exact terms as to enable any person skilled in the art to which it pertains, or with which it is most nearly connected, to make and use the same, and shall set forth the best mode contemplated by the inventor or joint inventor of carrying out the invention.

“any person skilled in the art”

“certain person skilled in the patent law”

## 발명의 공개 기능(2)

- 기술 개발자에게 특허 명세서는 중언부언, 해독하기 어려운 법률 문서
  - Ben Klemens, *The Rise of the Information Processing Patent*, 14 B.U. J. Sci. & Tech. L. 32, 33 (2008) “patent databases are among the least important external information sources available to firms.”
  - Viven Irish, *How to Read a Patent Specification*, 10 ENG’G MGMT. J. 71, 71 (2000) “Most engineers actually read the patents said it’s“ an uncomfortable experience, the document seems to be unreasonably repetitive and in parts almost incomprehensible.”
- 특허 제도가 없어도 발명은 공개됨 → 시장, Free/Open Source Softw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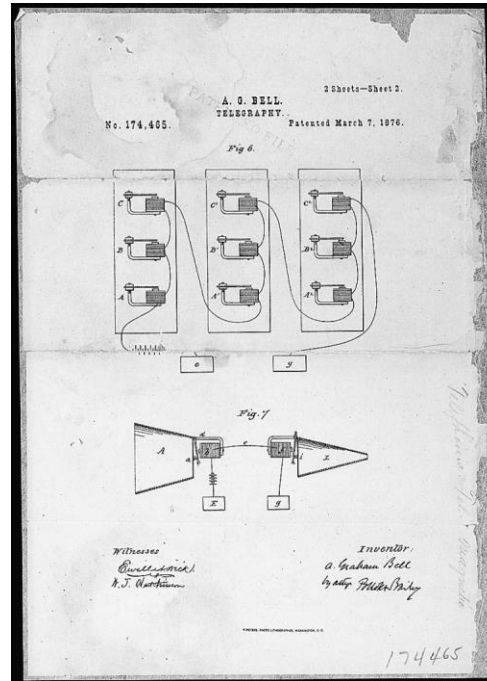
# 권리의 통지 기능(1)

- ❑ 특허청구범위
  - 독점 영역과 자유 기술 영역의 구분
- ❑ 통지 기능의 실패
  - 보호대상의 추상성: 기능? 기술적 사상
  - 불확정 개념: 균등론, 목적 해석론(purpose construction)
  - 해석 기준 자체가 변함
- ❑ 권리의 유효성도 불명확
  - 50% 이상 무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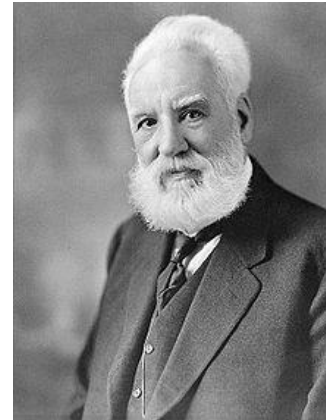


# 독자 개발자 = 모방자

**Elisha  
Gray**



**Alexander  
Graham Bell**



## 발명의 집중 현상

전화기: Bell, Gray

전구: Edison, Swan

집적회로: Kilby, Noyce

전신: Morse, Henry, Cooke, Wheatstone

망원경: Hans Lippershey, Drebbel, Fontana, Jansen, Metius, Galileo)

비행기: Wrights, Glenn Curtis

레이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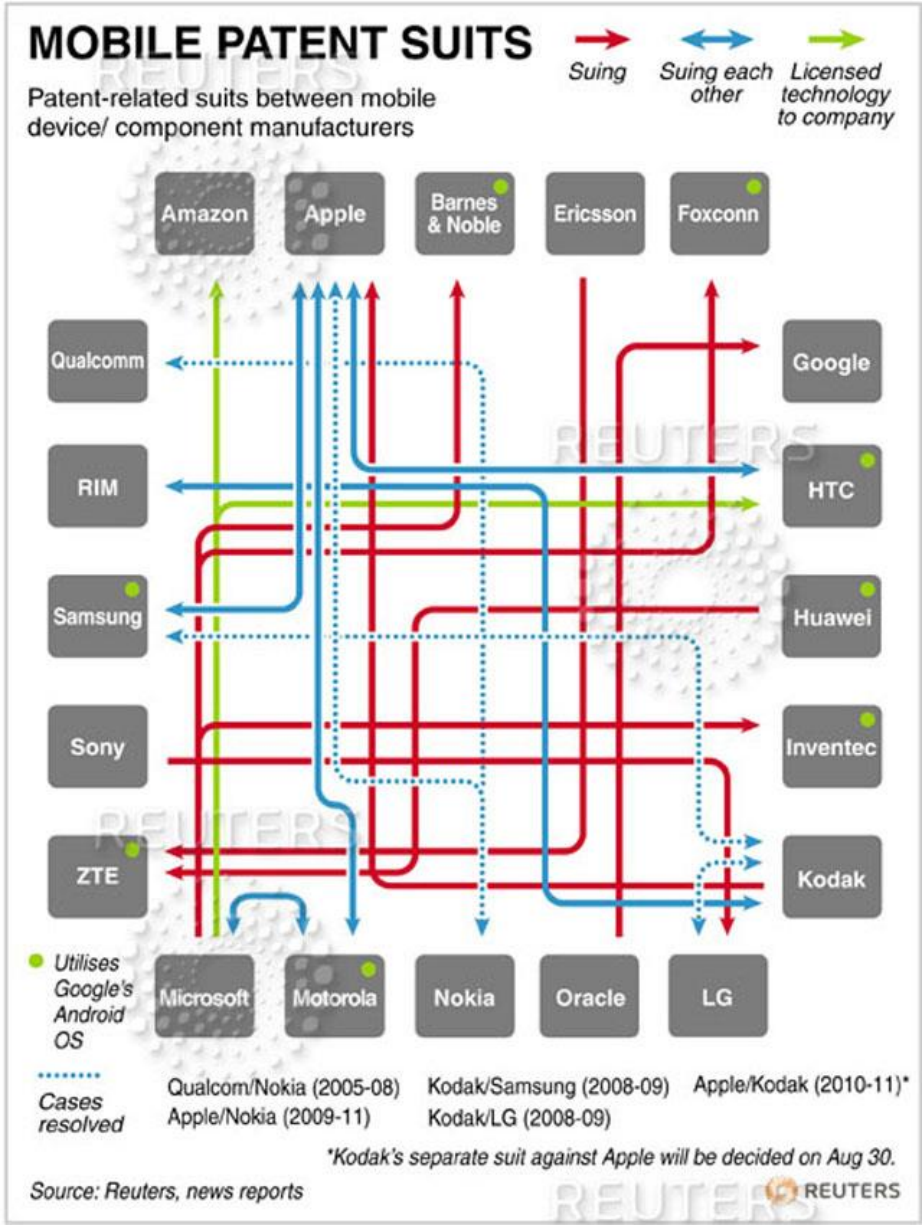
플라스틱



Based on our research, we believe there are more than **250,000 active patents** relevant to today's smartphones

# THE Patent W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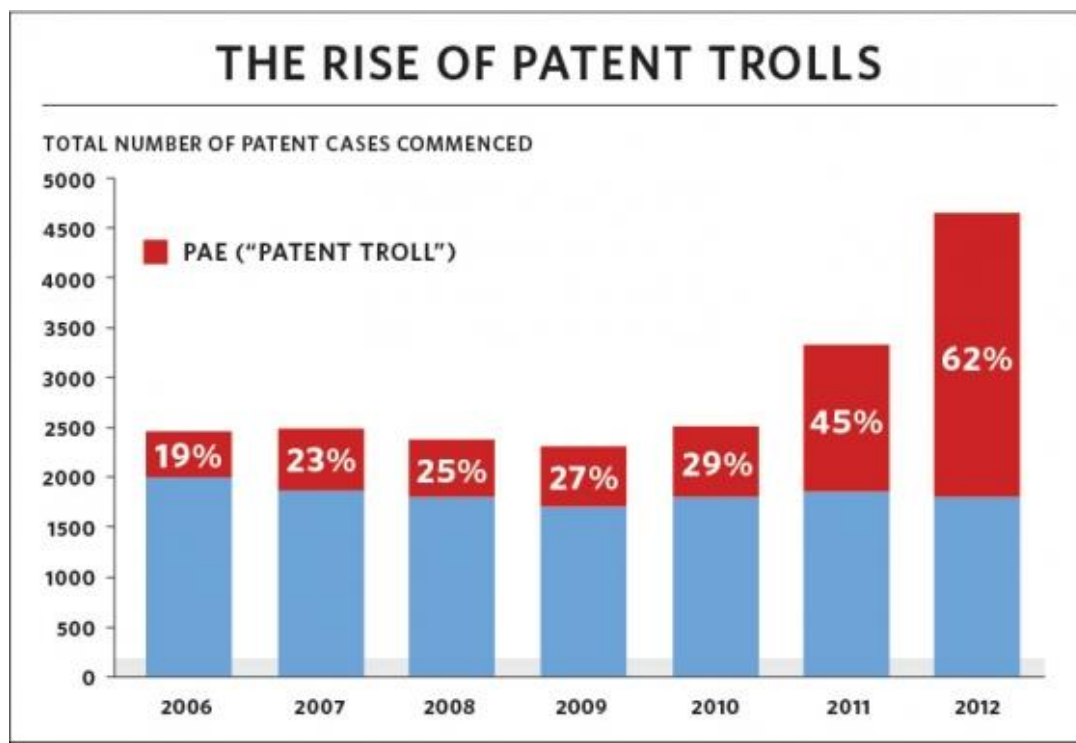
THE CONVOLUTED BATTLEFIELD OF TECH IP.



# 특허 괴물 (1)

## 특허 괴물

- 특허기술을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으면서 막대한 배상금을 노리고 특허침해 소송을 공격적으로 제기하는 자
- NPE (Non-Practicing Entity) - 비실시기업, 특허관리전문회사
- Patent Assertion Entity



## The Direct Costs from NPE Disputes

[James E. Bessen](#)

Boston University - School of Law; Research on Innovation

[Michael J. Meurer](#)

Boston University - School of Law

June 28, 2012

NPE 소송 대응 비용  
2011년에만 290억 달러

## 특허괴물 (2)

- 로드시스(Lodsys) - 앱 내에서 다른 제품의 판매가 일어나면 특허권(제 7,620,565호) 침해 주장 → 트윗 어플 트윗트리픽(Twitterrific)
- 네트워크 스캐너로 문서 스캔하여 이메일로 보내는 행위 → 특허권 침해 주장, 침해사 직원 한 명당 천 달러의 사용료를 요구
- 퍼스널 오디오(Personal Audio) - 포드캐스팅(podcasting) 특허권 침해 주장, 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8백만 달러의 배상 판결
- 이노바티오 아이피 벤처스(Innovatio IP Ventures) - 무선랜(WLAN) 기술에 대한 특허 주장, 와이파이(Wi-Fi) 접속을 제공하는 레스토랑, 커피숍, 슈퍼마켓, 호텔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
- Eolas – interactive Internet technology 모조리 특허 침해 주장 - 1999년 MS IE 상대로 5억 달러 배상 판결 (2012년 결국 특허 무효 판결)

- ❑ 독점 영역 회피 → 불가능
- ❑ Patent Thicket → 과다한 정보 비용

특허 침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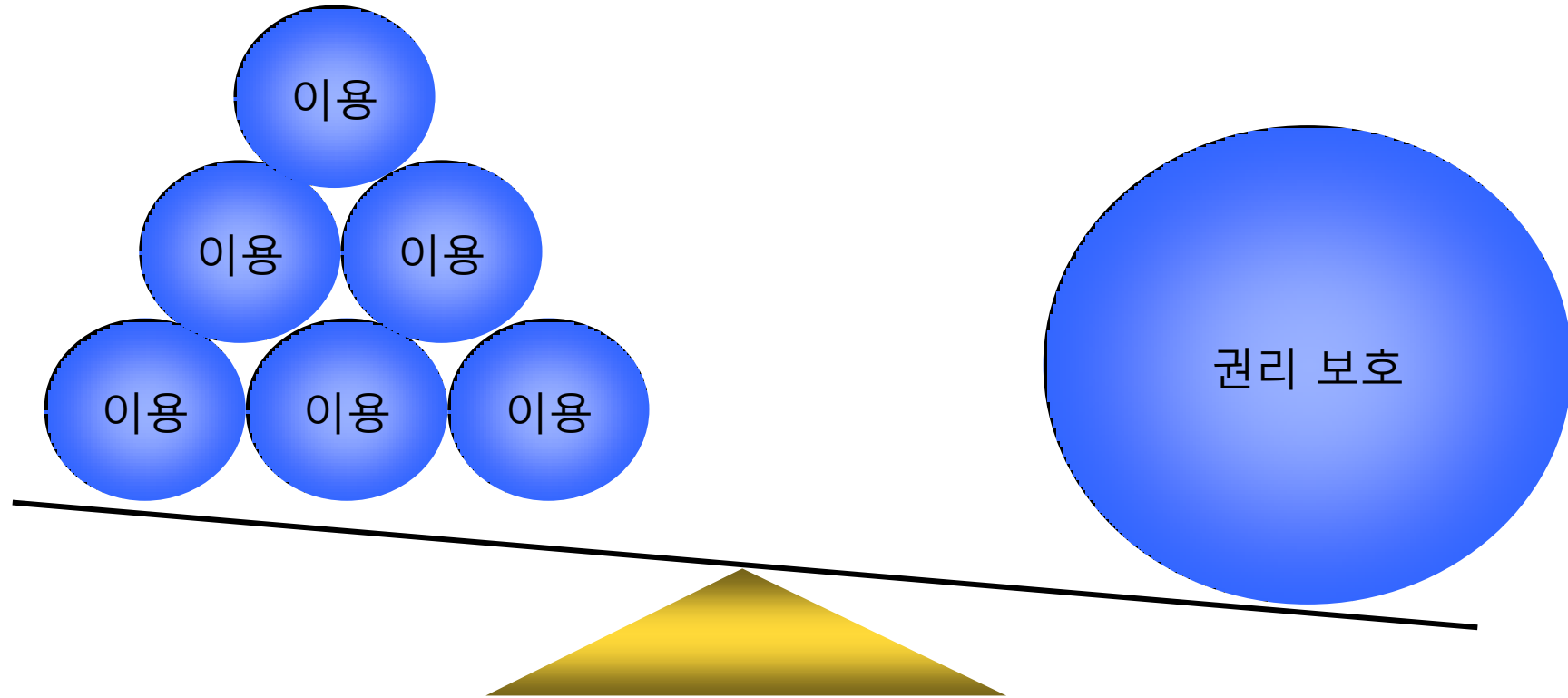
Ignoring Patent → More efficient





# 저작권 제도의 문제점

# 저작권 제도의 균형



# 저작권 최대주의 (1)

- 권리 보호 강화
  - 보호기간 연장(사후 70년)
  - 새로운 권리 추가(공중송신권, 기술적 보호 조치, 일시적 저장)
- 집행 강화
  - 특수 OSP의 필터링 의무
  - 저작권 삼진아웃제
  - 민사적 구제 범위 강화
  - 상설단속반
  - 문화부공무원 → 저작권특별사법경찰권

# 저작권 최대주의 (2)

## ☐ 행위자

- 저작권 산업계
  - 영화, 음악, 출판, 미술, 만화, 예능, 게임, 컴퓨터 소프트웨어
- 통상 관료
- 문화부 관료

## ☐ 경로

- 대외: 다자간 협정(TRIPS, 베른협약, WCT, WPPT) + 양자간 협정(FTA) + 복수국간 협정(ACTA) + US Special 301 Report
- 대내: 저작권 산업계의 로비 + 문화부 관료의 자발적 정책 + 무기력한 국회

# 문제점과 원인

## ❑ 문제점

- 저작권 최대주의 과잉 대변
- 제도의 균형 추구 실패

## ❑ 원인

- 제도 자체의 난해함
- 결집된 저작권자 ← → 흩어진 이용자
-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의 과장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 규모 :

신뢰할 수 있나?

#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 규모 산정



<p>대한민국 한국음악저작권협회</p>	<p>KAPPA 한국음원제작자협회</p>	<p>Federation of Korea Music Performers 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p>
<p>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p>	<p>대한민국 한국방송작가협회 KOREAN RADIO &amp; TV WRITERS ASSOCIATION</p>	<p>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p>
<p>krtra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 Korea Reprographic and Transmission Rights Association</p>	<p>KMVA 대한민국 한국영상산업협회</p>	<p>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p>
<p>대한민국 한국방송실연자연협회</p>	<p>KOREAN FILM PRODUCERS ASSOCIATION   KFPA 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p>	<p>KDB Korea Database Agency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p>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요약본)**

발행일 : 2014.06

주요내용 : \* 2013년 온·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피해 현황

[다운로드](#)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발행일 : 2014.06

주요내용 : \* 2013년 온·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피해 현황

[다운로드](#)



**2013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요약본)**

발행일 : 2013.08

주요내용 : \*2012년 온·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피해 현황

[다운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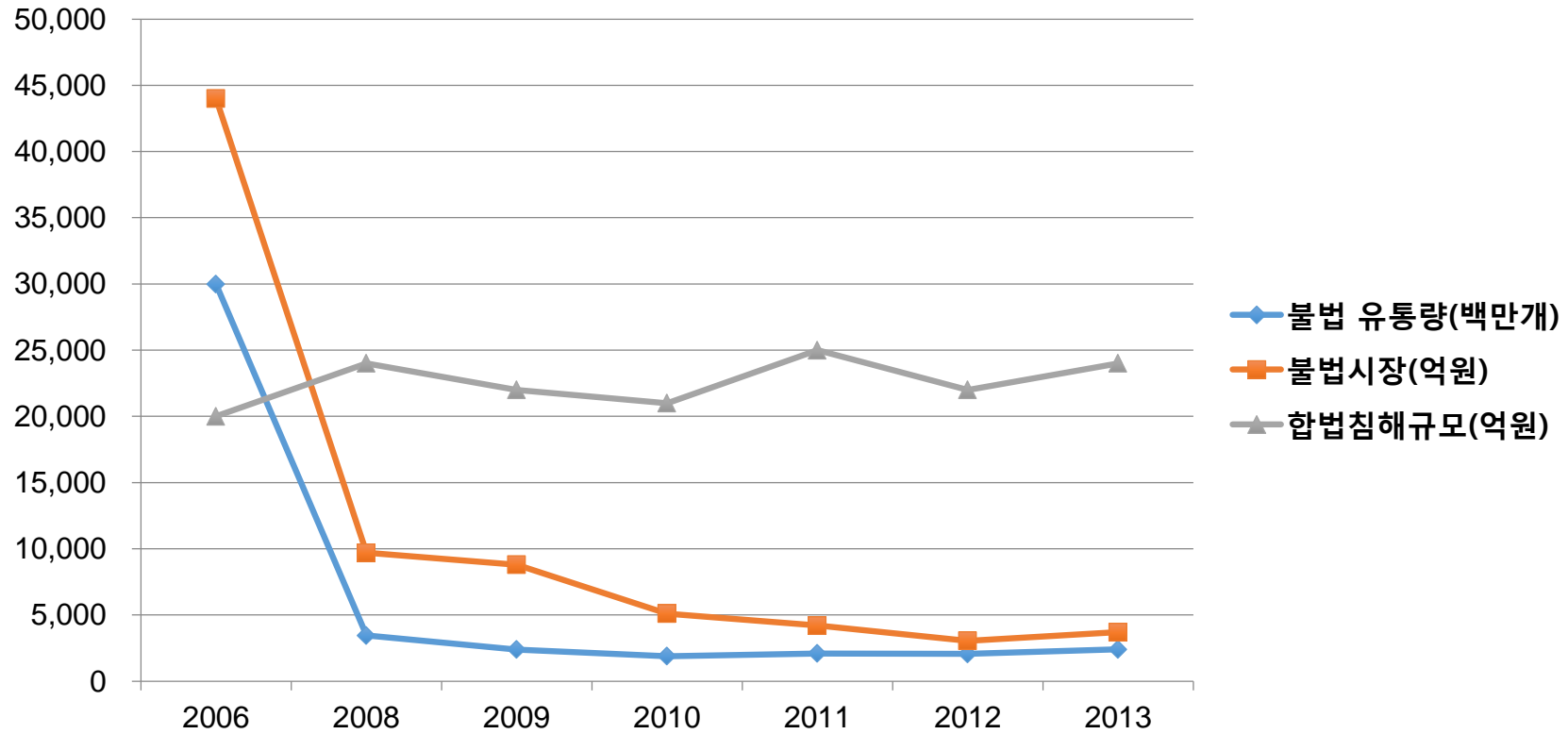
**2013 저작권 보호 연차 보고서**

발행일 : 2013.06

주요내용 : \* 2012년 온·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피해 현황

[다운로드](#)





연도	불법 저작물 유통량(개)	불법 저작물 시장규모(원)	합법 저작물 침해 규모(원)
2013년	24억 (21억)	3천 7백억 (554억)	2조 4천억
2012년	20억 6천만 (18억)	3천 5십억 (856억)	2조 2천억
2011년	21억 (18억)	4천 2백억 (859억)	2조 5천억
2010년	18억 9천만 (16억)	5천 1백억 (1,658억)	2조 1천억
2009년	23억 9천만 (18억)	8천 8백억 (1,870억)	2조 2천억
2008년	34억 5천만 (29억)	9천 7백억 (2,536억)	2조 4천억
2007년	-	-	-
2006년	299억 8천만	4조 4천억	2조

$$V = \sum_{C_v}^5 \left[ \left\{ \left( \frac{C_{ai}}{n_{ai}} \times \frac{n_{ai}}{n_{ci}} \right) \frac{n_{ci}}{n} \times NP_i \right\} + \left\{ \left( \frac{C_{bf}}{n_{bf}} \times \frac{n_{bf}}{n_{cf}} \right) \frac{n_{cf}}{n} \times NP_f \right\} \right]$$

$$= \sum_{C_v}^5 \left\{ \left( \frac{C_{ai}}{n} \times NP_i \right) + \left( \frac{C_{bf}}{n} \times NP_f \right) \right\}$$

$V$  :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C_v$  : 합법저작물 시장이 침해된 콘텐츠 분야(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C_{ai}$  : 온라인 불법복제물이 합법저작물을 침해한 양

$n_{ai}$  : 온라인 합법저작물 침해자 수

$n_{ci}$  : 온라인 불법복제물 이용자 수

$n$  : 조사대상자 수

$N$  : 만13 ~ 69세 전체 인구 수

$P_i$  : 온라인 합법저작물 분야별 시장 단가

$C_{bf}$  : 오프라인 불법복제물이 합법저작물을 침해한 양

$n_{bf}$  : 오프라인 합법저작물 침해자 수

$n_{cf}$  :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이용자 수

$P_f$  : 오프라인 합법저작물 분야별 시장 단가

# 합법저작물 침해 규모

- ❑ 전환율: 불법복제물 이용 → 합법저작물 이용
- ❑ 전국 16개 시도의 만13~69세 8,000명 대상 설문 조사(2014년 보고서)
- ❑ 구체적인 설문내용은 비공개 : “불법복제물 사용경험이 있는가? 정품으로 구입할 의사가 있었으나 불법복제물의 이용으로 구입하지 않게 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 ❑ 전환율
  - 음악 69.7%
  - 영화 43.6%
  - 방송 23.4%
  - 출판 34.7%
  - 게임 48.2%
  - 전체 평균 55.6%.

GLOBAL PIRACY STUDY

PRESS RELEASES

METHODOLOGY



## Global Software Piracy

Well over half of the world's computer users — 57% — admit they pirate software. While the global software piracy rate hovered at 42% in 2011, the steadily expanding marketplace in the developing world drove the commercial value of software theft to \$63.4 billion.

Learn more about software piracy across the globe. Click and drag to spin globe. Click on dots for country piracy rates, commercial value of pirated software and admitted piracy rates.

2011

Software Piracy Rate  
by Region

Total  
Worldwide  
**42%**



## Shadow Market of Pirated Software Grows to \$63 Billion

This year's BSA Global Software Piracy Study marks the first time a large sample of computer users around the world have been asked directly, "How often do you acquire pirated software or software that is not fully licensed?" The answers people have given to that and other questions reveal sharp divides between the habits and outlooks of computer users in emerging and developed markets. Those differences help explain why the global piracy rate hovered at 42 percent in 2011 while a steadily expanding marketplace in the developing world drove the commercial value of software theft to \$63.4 billion.



# BSA v. SPC

## ■ BSA Global Software Piracy Study 2011

- 2011년 불법복제 손실액이 전년 대비 약 420억 원 증가한 약 8천 9백억 원으로 증가(역대 최대규모) → 국내 경제 규모의 확대와 **고가(高價)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증가**가 원인.

## ■ SPC 보도자료

- 2011년 적발된 SW 온라인 불법복제 게시물 수는 총 95,936개로 2010년 (101,974개) 대비 6% 감소 → **고가 SW 제품 불법복제가 크게 감소**한 데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 BSA v. ChinaLabs

## ☐ BSA

- 중국 소프트웨어 해적율(piracy rate): **77%**

## ☐ ChinaLabs.com

- 중국 정부의 용역을 받아 해적율 조사
- 2011년: **38%** (2010년 41%에 비해 감소)
- BSA는 개인 컴퓨터의 해적율만 반영하였다고 비판

# BSA → IDC

## IDC - Methodology

[ Total Number of Software Units Installed - Legitimate Number of Software Units ]

**PIRATED  
SOFTWARE UNITS**  

---

**TOTAL SOFTWARE  
UNITS INSTALLED**

[ Number of PCs Getting Software x Number of Software Units per PC (Software Load) ]



# IDC – 얼마나 정확한가?

## ■ 해적율의 분모값

- 어느 PC에 설치되어 있는 총 소프트웨어의 개수는 28개 국가의 총 6천명의 이용자가 실제로 자신의 PC에 설치한 소프트웨어의 개수를 표본
-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에서 발표한 신흥시장 척도값 (ICT Development Index라고 함)을 적용 → 전 세계로 환산

## ■ 해적율의 분자값

- 합법 소프트웨어의 전체 시장 가치
- 소프트웨어 유닛 평균 가격

# GAO (미국연방회계감사원)

## ■ GAO, Observations on Efforts to Quantify the Economic Effects of Counterfeit and Pirated Goods (GA-10-423), April 2010

- 경제적 피해 규모는 해당 산업계 스스로 산출한 것으로 독립된 다른 기구에서 검토한 바 없고, 피해 규모 산정을 위한 기초 데이터나 방법론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
- 지재권자인 기업들은 자신의 피해 규모를 마사지하여(laundering) 법 개정이나 지재권 집행의 강화에 이용하고 있다.
- 이들은 자신들의 추정치를 정부에 제출하고 이를 공식적인 증거인 것처럼 언론에 홍보함으로써, 의심스러운 가정에 기초한, 그리고 이해당사자들이 부풀린 자료에서 나온 수치들이 결국에는 “객관적”이란 외피를 쓰고 “실증적 타당성”을 획득한다고 지적.

# 한국에만 존재하는 저작권 최대주의

# 삼진아웃제(1)

- ❑ 2009년 7월 23일 시행(세계 최초)
- ❑ 내용
  - 반복 침해 이용자: 계정 정지 (6개월내)
  - 반복 침해 게시판: 서비스 정지 (6개월내)
- ❑ 권한
  - 문화부 장관의 명령(§133의2)
  - 저작권위원회 시정권고(§133의3)
- ❑ 게시판 삼진아웃은 유사한 입법예가 없음.

# Global Map of Three-Strikes Disconnection

Europe  
FR, 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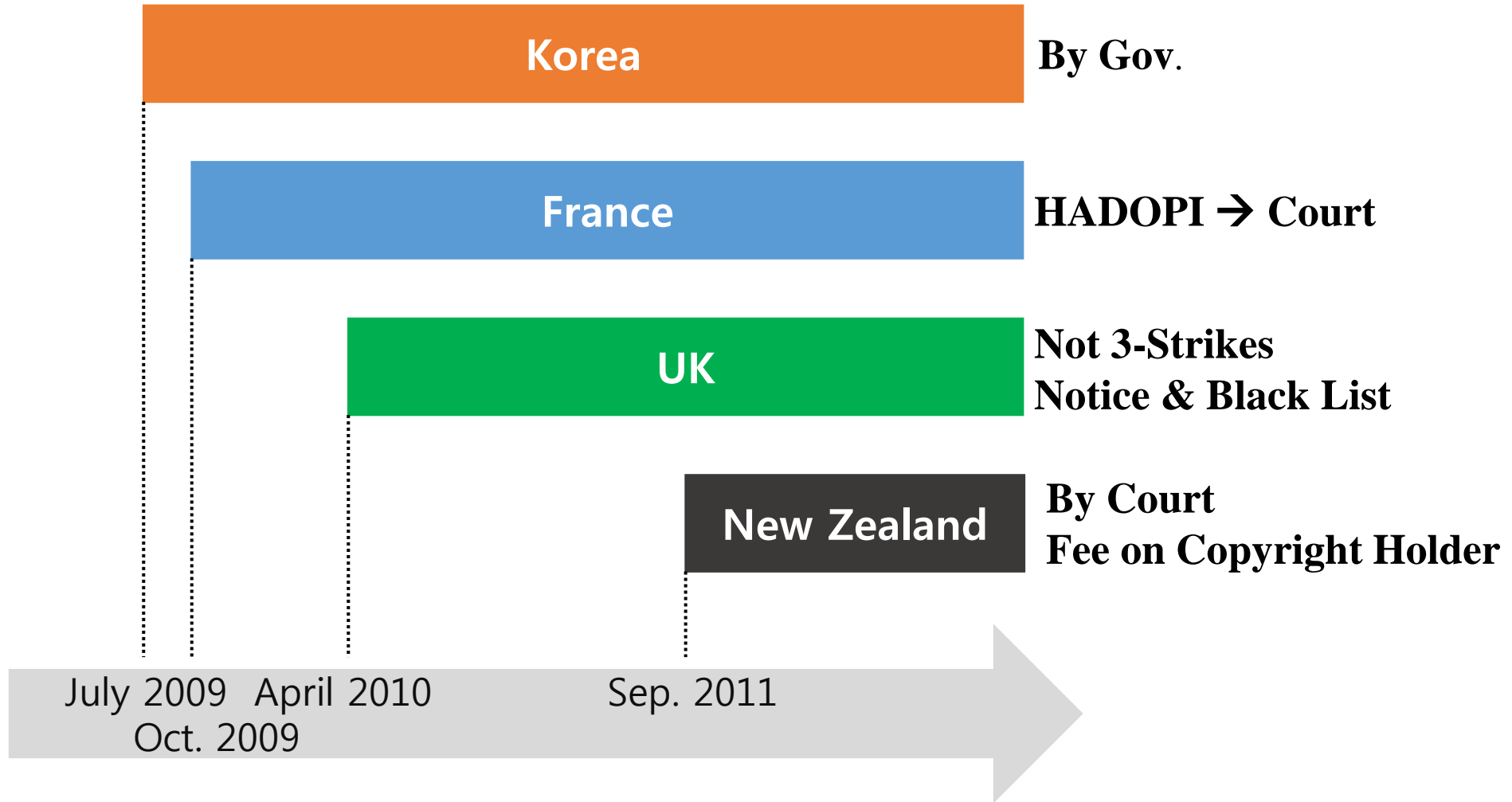
Asia  
KR, NZ

N.America  
None

Africa  
N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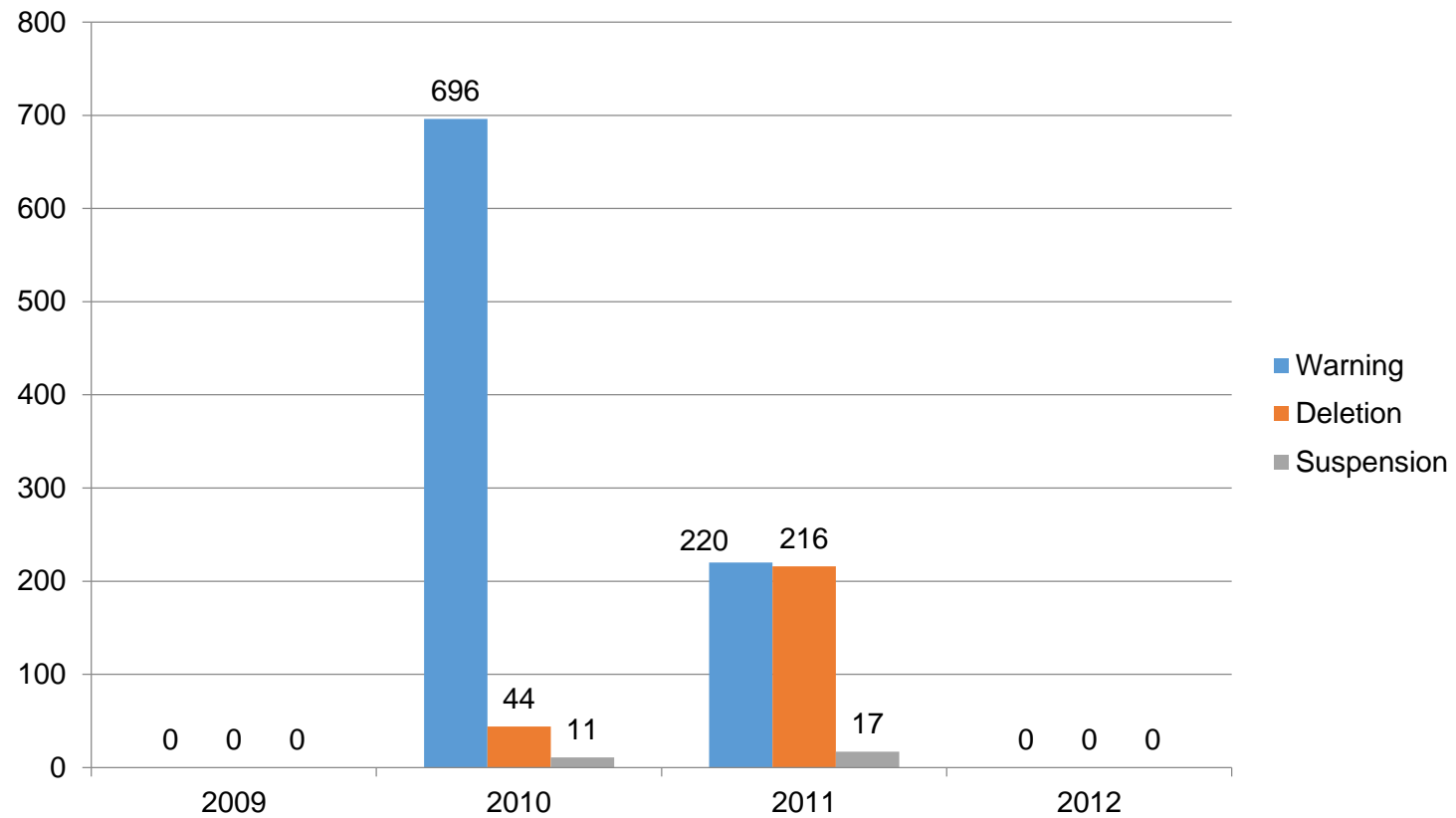
S. America  
None

# Three Strikes Disconn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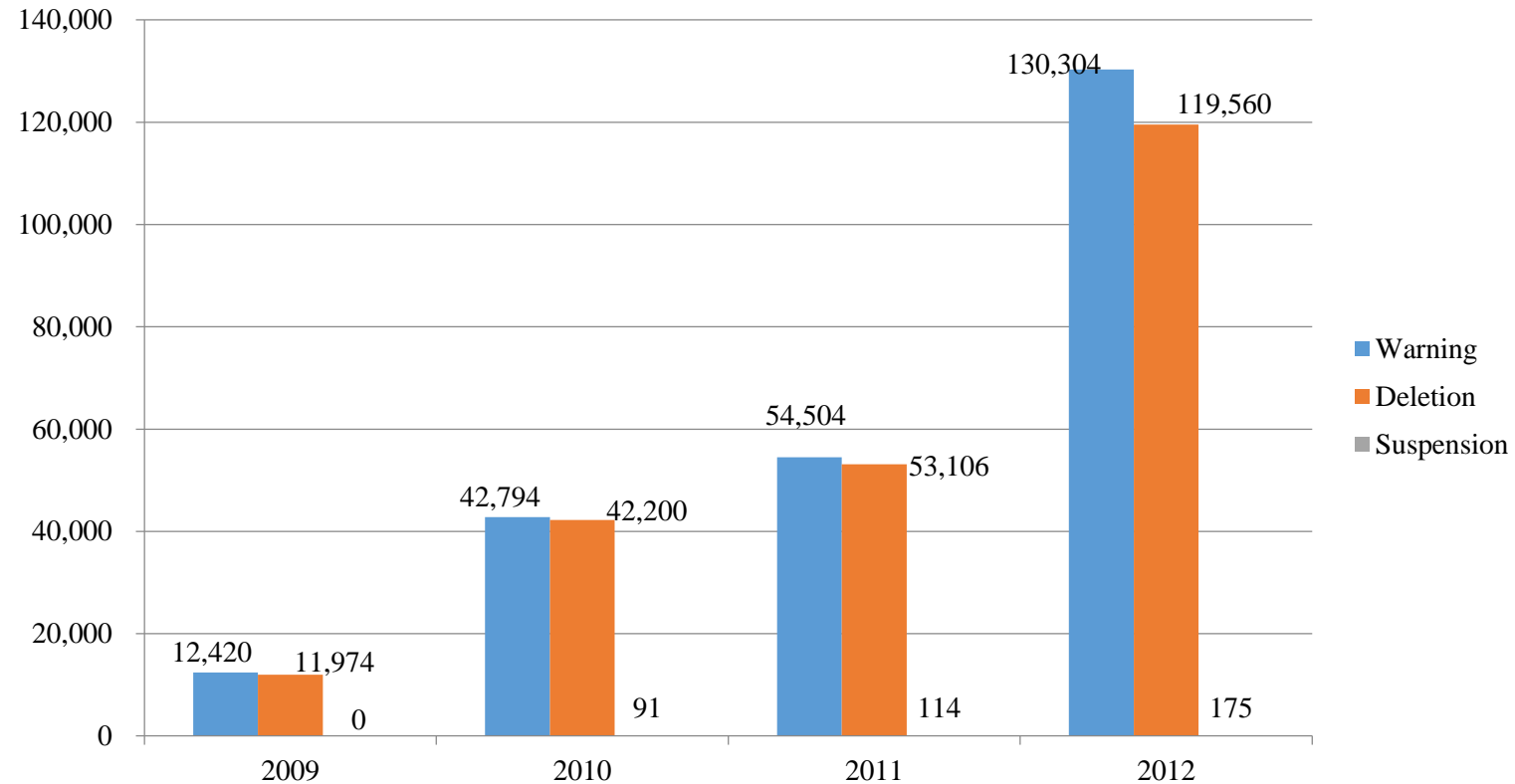
# 삼진아웃제(2)

문화부장관의 명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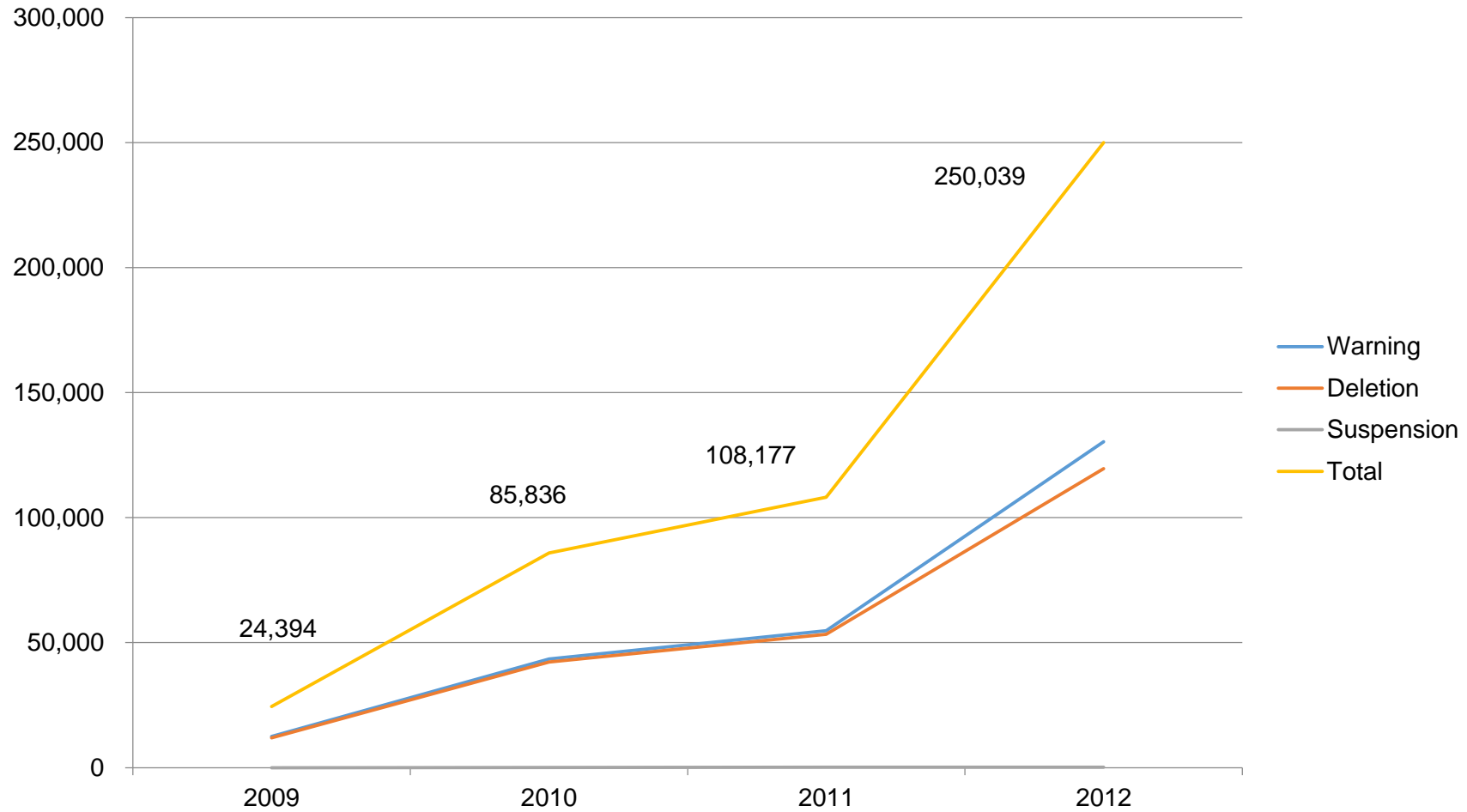
# 삼진아웃제(3)

## 저작권위원회 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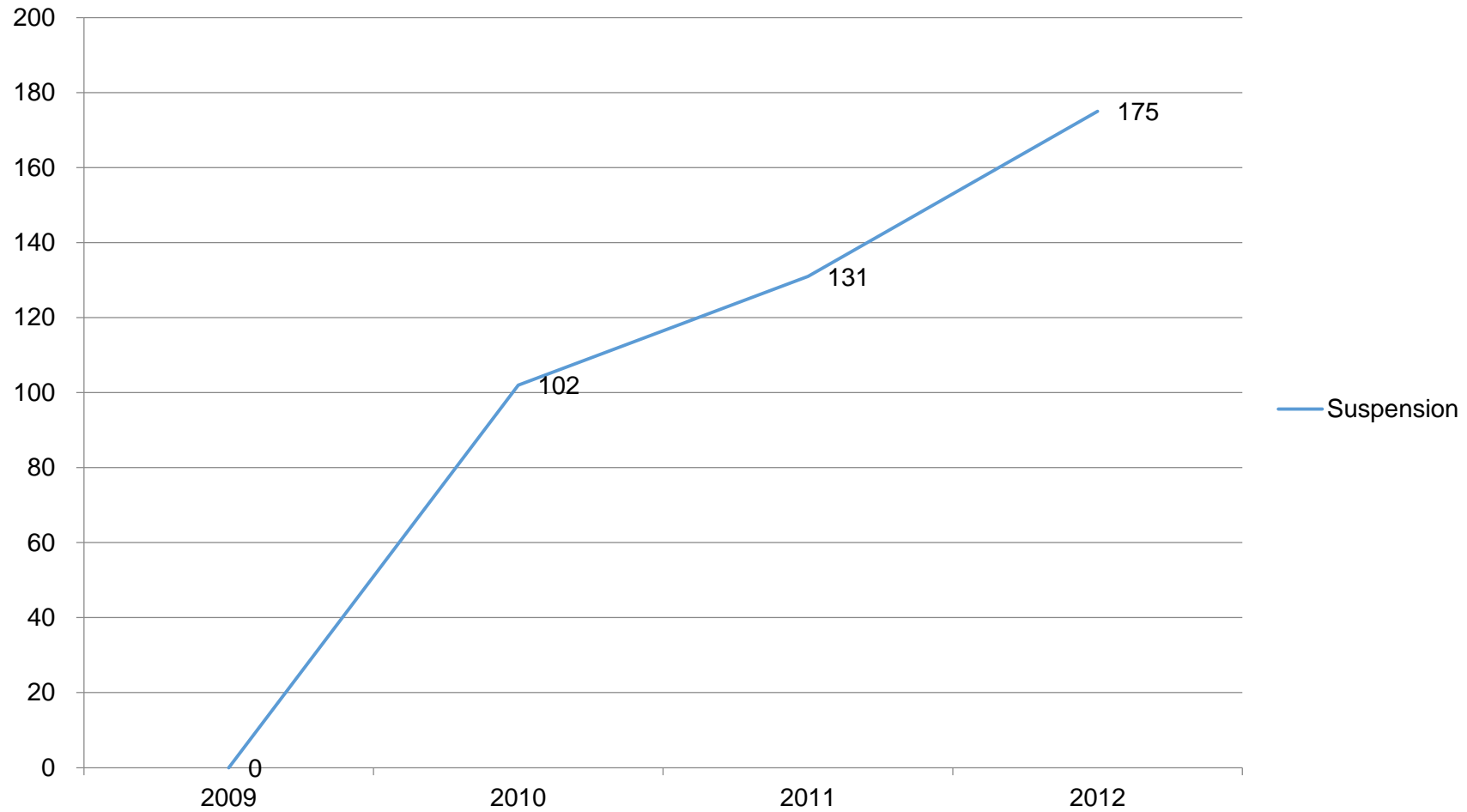




# 삼진아웃제(4)



# 삼진아웃제(5)



# 삼진아웃제(6)

Year 2010 by 91 users	No. of Recomm.	File Size (Gbyte)	How many upload	Loss (KRW)
<b>Total</b>	301.00	2,000.13	1,497.00	299,678,600
<b>Average</b>	3.30	21.98	16.45	3,293,171
<b>How much works?</b>	SW/Game: 570, Audio/Video: 1,115, Printed Works: 154, Total: 1,839			
Year 2011 by 114 users	No. of Recomm.	File Size (Gbyte)	How many upload	Loss (KRW)
<b>Total</b>	447.00	2,354.61	1,342.00	141,493,660
<b>Average</b>	3.92	20.65	11.77	1,241,172
<b>How much works?</b>	SW/Game: 684, Audio/Video: 1,333, Printed Works: 336, Total: 2,353			
Year 2012 by 175 users	No. of Recomm.	File Size (Gbyte)	How many upload	Loss (KRW)
<b>Total</b>	920.00	7,325.99	3,440.00	274,425,000
<b>Average</b>	5.26	19.66	19.66	1,568,000
<b>How much works?</b>	SW/Game: 536, mobile app.: 330, Audio/Video: 6,112, Printed Works: 2,624, Total: 9,602			

# 삼진아웃제(7)

Trimmed Mean Value	No. of Recomm.	File Size (Gbyte)	How many upload	Loss (KRW/USD)
2010	3.14	16.09	10.84	399,500/339.57
2011	3.61	18.95	10.30	355,860/315.64
2012	4.26	31.41	14.03	546,610/476.73

- "thdus38317" : 9개 방송물 업로드, 피해규모 9천원
- 2009년 문화부 저작권법시행령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
  - 동 조의 적용을 받는 자는 온라인상에서 ‘반복적으로’ 불법 복제물을 복제·전송하는 자로서 주로 불법 복제물을 전문적으로 유통시키는 헤비 업로더가 규제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함
  - \*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는 헤비업로더는 약 1,000명 내외로

# 특수 OSP의 기술조치 의무 (1)

## ❑ 저작권법 제104조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제공자(P2P, 웹하드 등)
- 권리자 요청 → 저작물의 불법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

## ❑ 저작권법 제142조

- 3천만 이하의 과태료

## 특수 OSP의 기술조치 의무(2)

- ❑ OSP → 일반 OSP / 특수 OSP : 한국 이외에 어떤 나라도 이런 구분을 하지 않음.
- ❑ 서비스 협정: 내국민대우 의무 위반 소지
- ❑ 투자 협정: 내국민대우 의무 위반 소지
- ❑ 한-EU FTA §10.66 위반 문제
  - Scarlet v. SABAM
  - SABAM v. Netlog
  - 프랑스 대법원
  - 독일 대법원

# 특수 OSP의 기술조치 의무(3)

## ■ 기술 조치 이행 여부는 누가 감시하나?

- 저작권보호센터
- 문화부는 과태료만 부과

##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과 그 한계

-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
  - 요건: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 대상: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만

# 웹하드 등록제 (1)

-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제2항
  -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해야 함
- ❑ 웹하드, P2P를 통한 불법 저작물·음란물 유통을 근절하려는 취지
- ❑ 68개 사업자, 91개 사이트 등록(2014년 8월 현재)
- ❑ 저작권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던 특수 OSP는 158개 사업자, 228개 사이트.



# 웹하드 등록제 (2)

## ■ 등록요건

### ■ 법에서 요구하는 5가지 기술적 조치 실시계획

-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 금지, 청소년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저작권법 제104조의 기술적 조치.

### ■ 시행령

- 음란물 식별/유통방지, 로그기록 2년 이상 보관, 저작권자 보상 절차 및 이행 계획 등

## ■ 최소한 6개의 등록요건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

# 저작권 침해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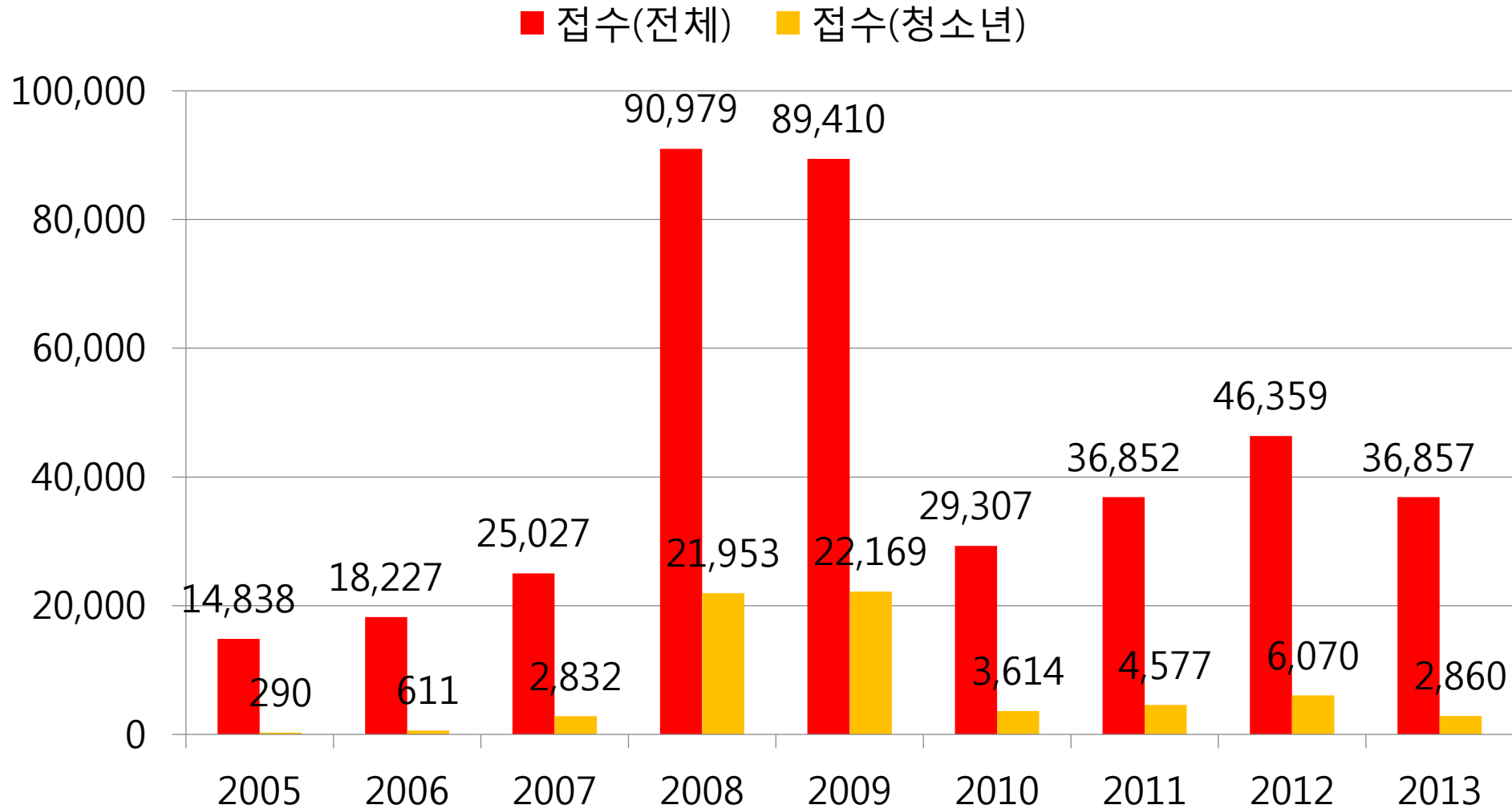
##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 5년 이하 징역, 5천만 미만 벌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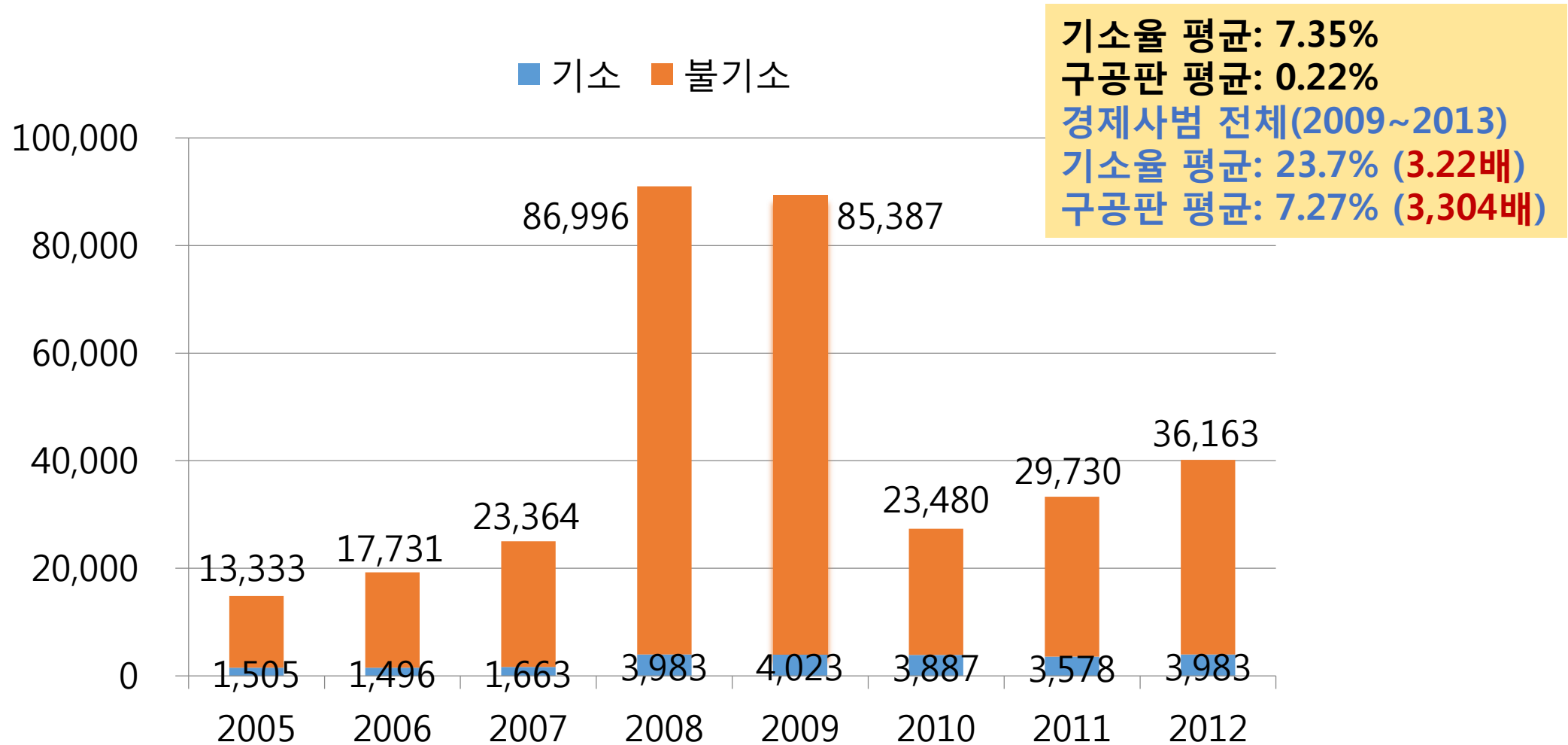
## ☐ 저작권법 제140조

-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 비친고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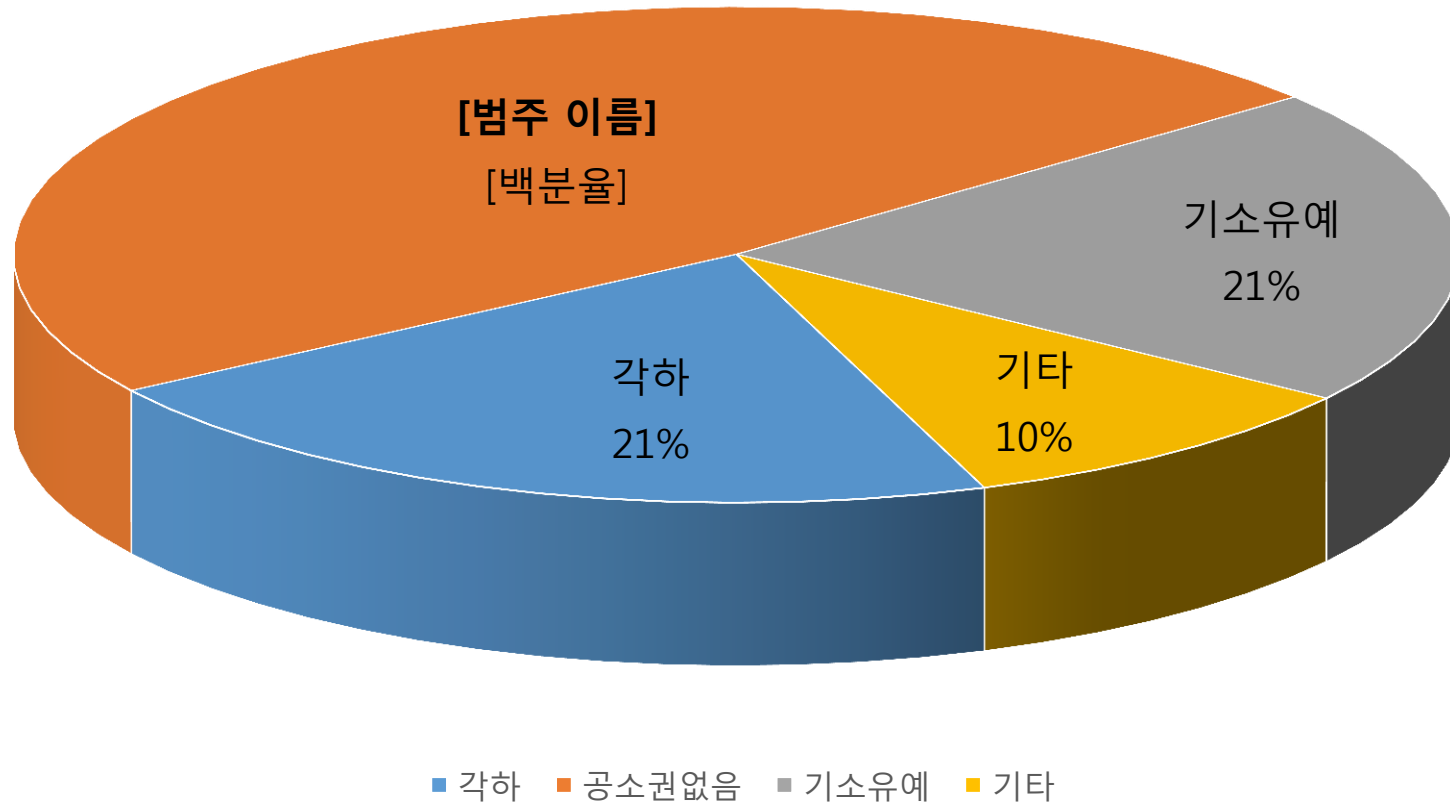
# 연도별 저작권법 위반사범 처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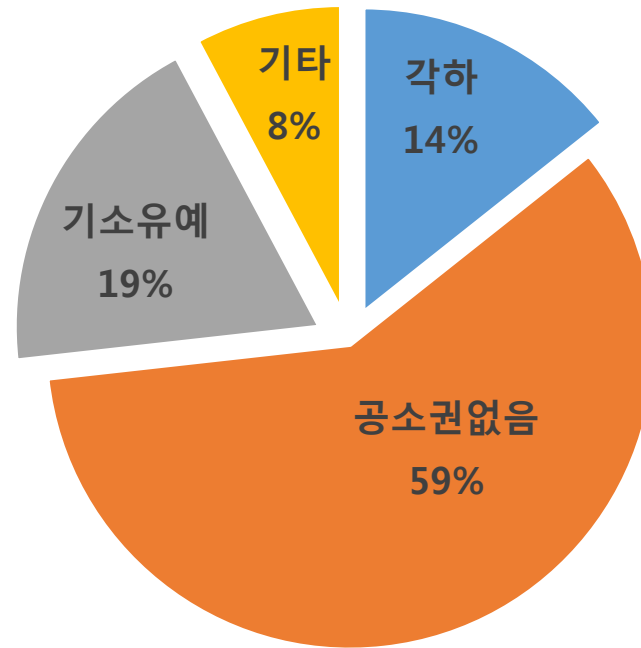
# 기소 : 불기소(건수)



# 불기소 내역(전체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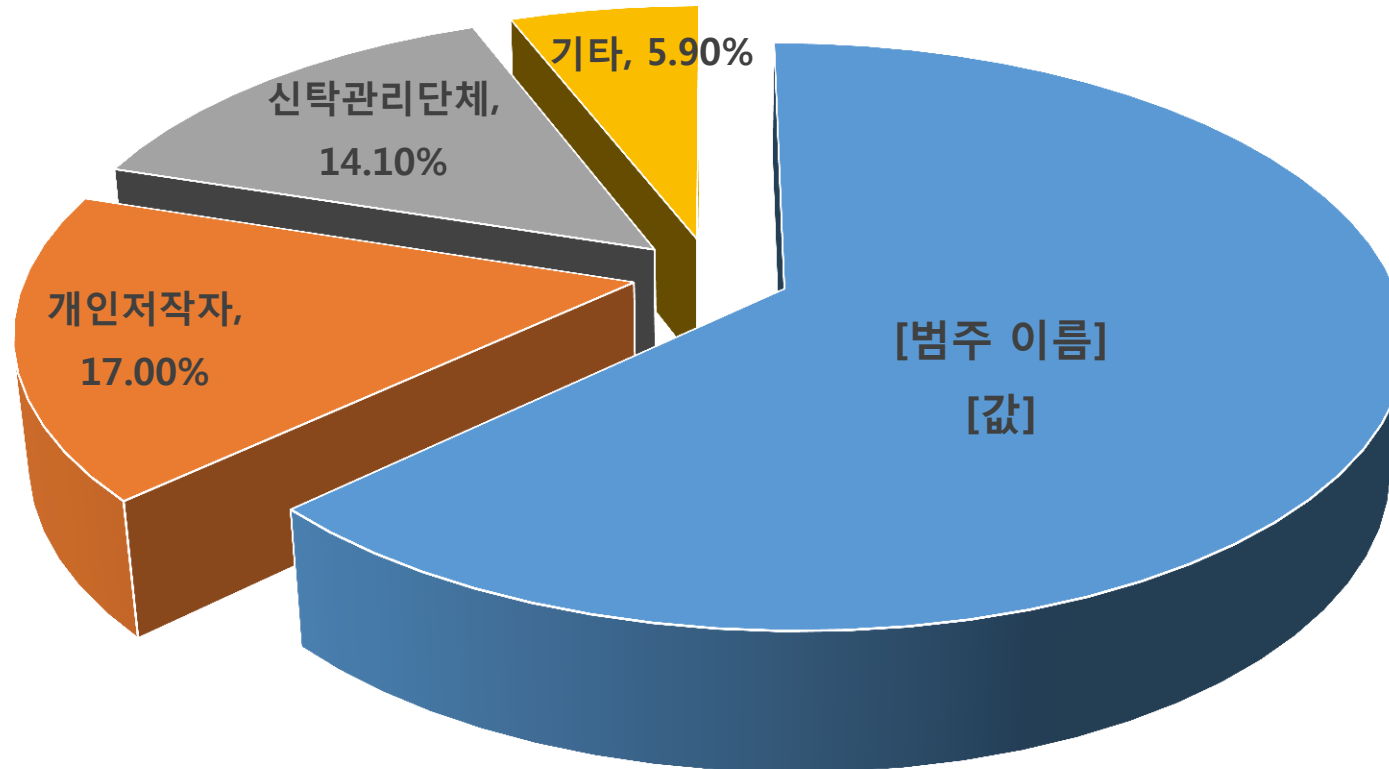


# 불기소 내역(2008년)



■ 각하 ■ 공소권없음 ■ 기소유예 ■ 기타

# 누가 고소하나?(2009년 교육이수자 기준)



# 문제점

■ 합의금 장사

■ 청소년의 피해

- 전체 범죄 미성년자 피의자율: 6%
- 저작권법 위반 23% or 50% 이상



# 저작권 경찰

- 2008년 도입
- 본부 5명, 5개 지역 사무소 30명
- 2009년~2013년까지 43억 8천6백만원 예산
-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단체, 민간인의 수사 참여

# 저작권 침해죄 (7)

- 단속
  - 정부합동단속반
  - 권리자의 고소 - 검·경
- 고소단계
  - 침해의 확신이 없어도 S/W 열거하여 영장 발부 → 무고죄
- 수사단계
  - SPC 직원이나 사설기관 직원이 기술지원 명목으로 참여 → 불법 수색
- 합의 단계
  - 필요 이상 구매 강요 + 전체 패키지 기준 → 저작권 침해죄가 거액의 합의금 갈취 수단으로 변질

# 저작권 침해죄 (8)

## ▣ 제도 개선

- 대부분 경미한 침해 → 민사적으로 해결하거나 분쟁조정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
- 실제 손해 이상의 배상금을 합의금으로 받음.
- 관대한 처벌 불가피 → 형벌의 과경화 + 위하력의 불감증 + 저작권 제도에 대한 거부감
- 형사처벌의 문턱 상황
  - 미국: 180일 이내에 피해액이 소매가액 1,000 달러 이상인 경우

# 05 오픈넷의 활동들

# COPYRIGHT REFORM

연구 분과	연구 주제
대안적 보상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 가격(경제적 보상)의 대안은?</li> <li>• 권리의 변용(물권적 권리 -&gt; 채권적 권리)</li> <li>• 저작권이 없던 시대(고려)의 지식·정보 생산/유통 구조 연구</li> </ul>
제도 균형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권리소진, 사적복제, 교육목적 이용, 공정이용, 이용제공권</li> <li>• 일시적 저장</li> <li>• 창작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b>best-seller clause, termination right</b>)</li> <li>• 보호기간(무방식주의, 등록제)</li> </ul>
저작권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작권 경찰제도</li> <li>• 권리남용</li> <li>• 형사처벌제도</li> <li>• 디지털집행(<b>ISP 면책, 삼진아웃제, 특수 OSP 규제, ISP의 모니터링 의무</b>)</li> </ul>
사회적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식의 편차(이용자, 권리자, 중개자, 저작권산업)</li> <li>• 피해 규모에 대한 재평가(경제적), 해적질에 대한 평가(문화 측면), 인권(정보문화 향유권)과의 관계</li> </ul>
정책/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작권 정책이 형성·집행되는 구조</li> <li>• 이해당사자의 참여, 정책 반영 구조</li> <li>• 통상 정책</li> </ul>

# 저작권법 개정안

## 삼진아웃제 폐지



- 삼진아웃제 전체 삭제
- 104조 폐지
- 국제캠페인

## 형사처벌 제한



- 피해 규모가 6개월 동안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 창작자의 실질적 보상




- 베스트셀러 조항
- Termination Rights

## 법률 지원

- 토렌트 다운로드 고소 후 민사소송 당한 경우
- 무협소설(잠마검선): 저작권자로부터 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사람에게 법률지원
- 저작권의 과도한 권리 행사에 대한 법적 대응

# Grooveshark



## Warning

불법·유해 정보(사이트)에 대한 차단 안내

귀하가 접속하려고 하는 정보(사이트)에서 불법·유해 내용이 제공되고 있어 해당 정보(사이트)에 대한 접속이 차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정보(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차단된 것이오니 이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트분야	담당기관	전화번호
안보위해행위	사이버 경찰청	1566 - 0112
도 박	사이버 경찰청	1566 - 0112
	게임물등급위원회	(02)2012-7877
음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02)3219 - 5286, 5154
불법 의약품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	(043)719-2658
불법 식품 판매 및 허위과대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관리과	(043)719-2058
불법 화장품 판매 및 허위과대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정책과	(043)719-3407
불법 의료기기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과	(043)719-3762
불법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02)3704-0538
불법 승차투표권 구매대행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	(02)2067-5813
불법 마권 구매대행	한국마사회	080-8282-112

### ○ 차단사유 문의 및 이의신청 안내

**사이트 운영자**는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차단사유 및 이의신청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정보내용에 따라 아래의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내용	전화번호
도박, 식의약품, 국가보안법 등	(02)3219-5131
음란·선정	(02)3219-5154
명예훼손, 상표권	(02)3219-5172



# SW 특허

- 특허청 심사기준 개정 대응
- 특허법 개정안(SW의 온라인 전송도 특허 침해)
- Free and Open Source
- 대안 법안 (SW 특허 대상에서 제외)

## ***THE FOUR FREEDOMS***



### ***USE***

*The Freedom to use the work and enjoy the benefits of using it.*



### ***STUDY***

*The Freedom to study the work and to apply knowledge acquired from it.*



### ***COPY***

*The Freedom to make and redistribute copies, in whole or in part, of the information or expression.*



### ***IMPROVE***

*The Freedom to make changes and improvements, and to distribute derivative works.*

# DISCUSSION